

수원시 의회 운영 조례 정비에 관한 연구

2021. 12. 23.



(수원시의회 운영 연구회)

참여 연구진

■ ‘수원시의회 운영 연구회’ 참여 의원 〈수원시 의회 운영 조례 정비에 관한 연구〉



■ 연구 용역기관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성 명	소 속	직 위
김은진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책임연구원
이승규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원
유장희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보조원

제 출 문

수원시 의회 의장 귀하

이 보고서를 「수원시의회 운영 조례 정비에 관한 연구」
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1년 12월

연구기관 :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대표 최병민)

연구수행기간 : 2021.9.8.~2021.12.23.

책임연구원 김은진(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공동연구원 이승규(고려대학교 학사)

연구보조원 유장희(성결대학교 학사)

《 소 목 차 》

제1장 연구개요	1
I. 연구의 목적	3
1. 연구의 필요성	3
2. 연구의 범위	3
II. 연구의 주요내용	4
1. 연구의 주요 내용	4
2. 연구방법	4
III. 기대효과	5
제2장 지방자치법 개정 경과 및 내용	7
I. 개정안 발의현황	9
II. 1988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11
1. 제안이유	11
2. 개정안 주요 내용	12
III. 2021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14
1. 개정이유	14
2. 개정 주요내용	14
3. 신규 지방자치법 비교	18
IV. 법 개정의 의의	21
1. 법 개정의 의의	21
2. 법개정의 특징	22
1) 자치입법권 강화	22
2)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	22
3) 중앙·지방간 관계	23
3. 법 개정의 주요 내용	23
1) 주민주권 구현 관련 주요 개정	23
2) 자치단체 역량과 자치권 강화 관련 주요 개정	24
3) 자치단체 책임성과 투명성 관련 주요 개정	24
4) 중앙-지방간 협력관계 및 행정 능률성 관련 주요 개정	24

《 소 목 차 》

4. 개정 지방자치법 평가	25
1) 긍정적 평가	25
2) 현행 지방자치의 한계	26
3) 개정 지방자치법의 문제점	26
5. 개선방안	28
1) 주민주권 구현의 근거조항의 보완	28
2) 지방정부 기관구성 다양화의 보완	28
3) 자치입법권의 보완	28
4) 자치조직권의 보완	29
5) 특별자치단체의 보완	29
6) 지방의회 역량강화의 보완	29
7) 주민자치회의 보완	29
8) 제도적 과제	30
V. 지방자치법 개정과 수원시 의회와의 관계	30
1. 특례시 지정관련	30
2. 수원시 의회 의원의 의견	32
제3장 해외의 지방자치	35
I. 영국	37
II. 미국	39
1. 다양한 유형의 지방자치 정부 도입	39
2. 지방자치 법규의 법률적 효력 강화	40
3. 자치 입법·행정의 균형	41
4. 주민 참여 강화	42
III. 프랑스	43
1. 행정상 분권인 프랑스 지방자치 제도의 의의	43
2. one point 또는 전면적인 헌법 개정과 지방자치제도 설계	44

《 소 목 차 》

IV. 스위스	45
V. 독일	47
VI. 일본	49
1. 전략적 광역연계의 강화	49
2. 자치입법권의 강화	50
3. 지방자치의 본지의 내용적 구체화	53
4. 주민자치의 강화	54
제4장 지방자치관련 법과 수원시 조례	55
I. 개정 지방자치법과 조례	57
1. 개정 지방자치법의 조례 위임 사항	57
1) 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라 조례로 정해야 할 규정	57
2) 법률에 따라 조례를 정비해야 하는 규정	58
II. 지방자치관련법과 수원시 조례	59
1.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59
2. 세종시법과 수원시 조례	63
1) 세종시법의 제정과 개정	63
2) 세종시법과 특례시	64
3) 세종시법과 수원시 조례	67
4) 회의 관련 세종시 조례와 수원시 조례의 비교	69
5) 교섭단체 관련 세종시와 수원시 조례 비교	121
제5장 결론	131
I. 수원시의회 기본조례 개정(안)	133
II.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개정(안)	147
참고문헌	149

《 표 목 차 》

<표 1> 지방자치법 개정안 발의현황	9
<표 2> 지방자치법 신구비교	18
<표 3> 우리나라와 일본의 자치입법권 관련규정 비교	51
<표 4> 시행예정 지방자치법과 지방분권법 비교	60
<표 5> 세종시법과 수원시조례 공통내용	67
<표 6> 세종시와 수원시 조례 비교	69
<표 7> 세종시와 수원시 교섭단체 규정 비교	121

《 그 림 목 차 》

<그림 1> 수원 특례시 홈페이지	31
<그림 2> 수원 특례시 홈페이지 사이트맵	31

제1장 연구개요

I. 연구의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 가. 국민주권시대가 도래했다고 할만큼 현재 국민들의 직접정치에 대한 열망이 높아지고 있고 그 열망이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더 가시화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
- 나. 지방자치단체는 독립성, 자율성 강화를 통해 권한이 확대되었으며 그에 따른 투명성 및 책임성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으며 이를 위한 주민들의 감시 강화가 예상됨
- 다. 기존에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각종 협의체, 또는 법적 근거 없이 행해지던 의원간의 내부 합의 등이 더이상 의회 의원만이 아니라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고 검증받아야 하는 시대라 할 수 있음
- 라. 따라서 지방자치법 개정의 취지에 맞게 의회의 권한과 역할을 명확히 하여 의원들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자신들의 권리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조례가 정비되어야 함

2. 연구의 범위

- 가. 공간적 범위 : 해외 및 수원시의 지방의회제도 분석
 - 미국, 영국, 일본 등 다른 나라의 지방의회 운영 조례에 대한 조사 및 시사점
 - 국내(수원시) 지방의회 운영 조례와의 비교 분석

나. 시간적 범위 : 1995.6월(민선지방자치 출범) ~ 2021.8월(현재)

다. 내용적 범위

- 지방자치법 개정 내용 분석 및 검토
- 주요내용을 조례에서 관철하기 위한 방안 모색
- 수원시의회 관련 기존 조례 검토 및 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른 제·개정안 제안

II. 연구의 주요내용

1. 연구의 주요 내용

가. 외국의 지방의회제도 분석

- 미국, 일본, 영국 등의 지방자치제도 분석
- 지방의회 운영과 관련된 조례(기본조례 등) 에 중점을 둔 분석

나.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 분석

- 지방자치법 개정 내용 분석
- 외국의 지방자치제도의 장점 도입방안 모색
-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권한과 역할에 대한 분석 및 제안

다. 조례 제·개정 방안 마련

라.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 개최

2. 연구방법

- 문헌연구

- 외국의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제도에 관한 문헌 연구
- 지방자치법 개정 및 특별지방자치단체에 관한 문헌연구

○ 사례연구

- 국내·외 지방의회제도 관련 정책 및 운영관리 유사 사례 분석

○ 조례 제·개정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2회)

- 수원 특례시 지정 이후 의회 운영을 위한 조례 제·개정안 제안

III. 기대효과

가.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감시 등의 역할 강화

나. 조례 제·개정을 통해 의회 활동을 현실화하고 그에 따른 법적 근거 마련

다. 조례 제·개정을 통해 의회의 역할과 권한을 명확히 하여 의회활동의 투명성, 책임성 강화

제2장 지방자치법 개정 경과 및 내용

I. 개정안 발의현황

의안명	대표발의자	제안일	심사경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안	양경숙의원	2020. 6. 1.	제382회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2020.9.10.)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회부
	정부	2020. 7. 3.	제382회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2020.9.10.)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회부
	김두관의원	2020. 8.31.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2020.9.15.자로 직접 회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법률안	김민기의원 I	2020. 6. 1.	제382회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2020.9.10.)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회부
	박완주의원 I	2020. 6. 1.	제382회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2020.9.10.)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회부
	엄태영의원	2020. 6. 4.	제382회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2020.9.10.)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회부
	김영진의원	2020. 6. 5.	제382회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2020.9.10.)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회부
	임종성의원	2020. 6. 8.	제382회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2020.9.10.)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회부
	김정호의원	2020. 6. 8.	제382회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2020.9.10.)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회부
	정춘숙의원	2020. 6. 8.	제382회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2020.9.10.) 상

의안명	대표발의자	제안일	심 사 경 과
			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 심사 제1소위원회 회부
	김석기의원	2020. 6.10.	제382회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2020.9.10.) 상 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 심사 제1소위원회 회부
	김윤덕의원	2020. 6.10.	제382회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2020.9.10.) 상 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 심사 제1소위원회 회부
	김정재의원	2020. 6.10.	제382회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2020.9.10.) 상 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 심사 제1소위원회 회부
	백혜련의원	2020. 6.12.	제382회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2020.9.10.) 상 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 심사 제1소위원회 회부
	기동민의원	2020. 6.19.	제382회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2020.9.10.) 상 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 심사 제1소위원회 회부
	민홍철의원	2020. 6.24.	제382회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2020.9.10.) 상 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 심사 제1소위원회 회부
	김승원의원	2020. 6.30.	제382회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2020.9.10.) 상 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 심사 제1소위원회 회부
	박완주의원 II	2020. 7. 1.	제382회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2020.9.10.) 상 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 심사 제1소위원회 회부
	김영호의원	2020. 7. 8.	제382회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2020.9.10.) 상 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 심사 제1소위원회 회부
	전혜숙의원 I	2020. 7. 8.	제382회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2020.9.10.) 상 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 심사 제1소위원회 회부
	서범수의원	2020. 7. 9.	제382회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2020.9.10.) 상

의안명	대표발의자	제안일	심 사 경 과
			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회부
	정청래의원	2020. 7.15.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2020.9.15.자로 직접 회부
	박덕흠의원	2020. 7.22.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2020.9.15.자로 직접 회부
	전혜숙의원 II	2020. 7.24.	제382회국회(정기회) 제14차 전체회의(2020.11.17.)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회부
	정성호의원	2020. 7.29.	제382회국회(정기회) 제14차 전체회의(2020.11.17.)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회부
	허 영의원	2020. 8.12.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2020.9.15.자로 직접 회부
	김민기의원 II	2020. 8.24.	제382회국회(정기회) 제14차 전체회의(2020.11.17.)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회부
	한병도의원	2020. 9. 7.	제382회국회(정기회) 제14차 전체회의(2020.11.17.)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회부
	강득구의원	2020. 9. 9.	제382회국회(정기회) 제14차 전체회의(2020.11.17.)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회부
	박완수의원	2020. 9.17.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2020.11.17.자로 직접 회부
	김형동의원	2020.11.17.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2020.11.23.자로 직접 회부

<표 8> 지방자치법 개정안 발의현황

II. 1988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1. 제안이유

지방자치의 건전한 육성과 민주행정제도의 정착·발전에 기여하고, 우리의 정치·경제·사회 및 행정여건에 알맞는 새로운 지방자치제도를 정착시키고자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하려는 것임.

2. 개정안 주요 내용

1.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하고 특별시·직할시·도와 시·군·구(특별시·직할시의 구에 한함)로 대별함(안 제2조 및 제3조)
2.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를 포괄적으로 예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로 사무배분기준을 정함(안 제8조 내지 제10조)
3.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 주소를 가진 자는 주민이 되며, 주민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권리와 의무를 가지도록 함(안 제12조 내지 제14조)
4.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은 법령의 범위안에서 조례와 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및 제16조)
5. 선거일 현재 20세 이상인 국민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된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지방선거의 선거권을 갖도록 함(안 제22조)
6. 지방선거의 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90일이상 계속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25세 이상인 자는 지방의회의원의, 30세 이상인 자는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의, 35세 이상인 자는 시·도지사의 피선거권을 갖도록 함(안 제23조)
7. 지방의회의원의 정수는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되, 특별시·직할시·도는 25인 내지 70인, 시와 자치구는 15인 내지 25인, 군은 10인 내지 20인의 범위 안에서 정하도록 함(안 제27조 및 제28조)
8. 지방의회의원은 임기 4년의 명예직을 하되 회기 중에는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 및 제32조)

9. 지방의회의 권한은 조례의 제정, 예산의 확정, 결산의 승인, 기타 주민부담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권 등으로 함(안 제35조 내지 제37조)
10. 지방의회의 운영은 정기회를 년1회로 하고, 연간 회의 총일수를 시·도는 70일, 시·군·자치구에 있어서는 6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안 제38조 및 제41조)
11. 지방의회에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2종을 두되, 상임위원회는 시·도에 한하여 설치하도록 함(안 제50조)
1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에 의하여 선출하되, 따로 법률로 정할 때까지는 정부에서 임명함(안 제86조 및 부칙 제5조)
13.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는 지방의회 의결사항에 대한 재의요구권 및 선결처분권을 부여하고(안 제98조 내지 제100조), 내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방의회의 위법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하는 의결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안 제159조), 지방의회는 행정사무조사권·출석답변요구권을 갖도록 하여 서로 견제할 수 있도록 함.
14. 지방자치단체에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기관·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 및 합의제행정 기관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01조 내지 제107조)
15. 지방자치단체에 과세권, 사용료·수수료·분담금의 부과·징수권과 예산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고, 그 운영·관리에 관한 절차와 방법을 정함(안 제113조 내지 제135조)
16.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는 상호 협력함을 원칙으로 하고 관련된 업무를 공동처리하기 위한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거나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9조 내지 제154조)
17.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할 때에는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

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1차로 시정을 명하고, 2차로 취소·정지할 수 있도록 하되 자치사무에 관하여는 위법사항에 한하도록 함(안 제157조)

18. 서울특별시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61조)

19. 이 법에 의한 최초의 지방의회는 시·군 및 자치구부터 구성하되, 그 지방의회의원의 선거는 이 법 시행일로 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하도록 하고, 시·도의회는 시·군 및 자치구의 의회가 구성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구성하도록 함(안 부칙 제2조)

20.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하고, 서울특별시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서울특별시의회의 구성과 동시에 이를 폐지함(안 부칙 제6조)

III. 2021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1. 개정이유

민선지방자치 출범 이후 변화된 지방행정환경을 반영하여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주민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와 이에 따른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을 다양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를 부여하며, 주민의 감사청구 제도를 개선하고,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며,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할 구역 경계조정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주민의 조례에 대한 제정과 개정·폐지 청구에 관한 사항을 현행 법률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기로 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그 내용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법」을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2. 개정 주요내용

가. 이 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및 집행기관의 구성을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에는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함(제4조).

나. 매립지 및 등록 누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 결정 절차를 개선함(제5조).

- 1) 종전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매립지 및 등록 누락지가 귀속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하는 경우, 이의제기기간 중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의제기가 없더라도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이의제기기간 동안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 없이 매립지 등이 귀속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하도록 그 절차를 간소화함.
- 2) 매립지 귀속과 관련되어 시·군·구 상호 간 비용 부담 등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종전에는 시·도에 설치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도지사가 조정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매립지 귀속 결정과 함께 병합하여 심의·의결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정하도록 함으로써 매립지 귀속 결정과 관련된 분쟁을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함.

다.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경계변경 제도를 개선함(제6조).

- 1)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생활에 불편이 큰 경우 등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관할 구역 경계변경에 관한 조정을 신청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신청내용을 공고한 후 경계변경자율협의체를 구성·운영하게 하여 상호 협의하도록 하는 장을 마련하며, 경계변경자율협의체의 구성을 요청받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협의체를 구성하지 못하거나 법에서 정한 협의 기간 이내에 경계변경 여부 등에 관한 합의를 하지 못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경계변경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도록 함.
- 2)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변경에 관한 합의가 된 경우이거나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경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내용을 검토한 후 이를 반영하여 대통령령안을 입안하도록 함.
- 3) 지방자치단체 간 관할 구역 경계변경 과정에서 상호 비용 부담, 그 밖의 행정적·재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경계변경에 관한 조정과 병합하여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

관이 조정하도록 함으로써 관할 구역 경계변경에 관한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도록 함.

라. 주민이 지방자치단체 규칙에 대하여 제정 및 개정·폐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제20조).

- 1)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이 상위법령이나 조례의 위임에 따라 주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발생하나 규칙에 대한 주민의 제정 및 개정·폐지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가 미흡한 측면이 있었음.
- 2) 주민은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규칙에 대한 제정 및 개정·폐지 의견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그 의견이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통보하도록 함.

마. 주민의 감사청구 제도를 개선함(제21조).

- 1) 주민의 감사청구 제도가 주민의 권익침해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 수단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감사청구 연령 기준을 종전의 19세에서 18세로 낮추고, 청구주민 수 기준을 시·도의 경우 종전의 500명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수에서 300명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수로 하여 주민의 감사청구 요건을 완화함.
- 2) 주민 감사청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주민 감사청구를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3년 이내에 제기할 수 있도록 제기기간을 연장함.

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등의 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된 지방자치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주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26조).

사.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 및 인사권 독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1조 및 제103조제2항).

- 1)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함.
- 2)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력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을 지방의회의 의장이 처리

하도록 함.

아. 지방의회위원의 겸직금지 조항을 정비함(제43조).

- 1) 지방의회위원의 겸직금지 대상이 불명확하여 각종 분쟁이 발생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기관·단체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으로 지방위원이 겸직할 수 없는 기관·단체의 범위와 의미를 명확하게 정함.
- 2) 지방회의의 의장이 지방의회위원의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공개하도록 하고, 지방회의의 의장은 지방의회위원의 겸직행위가 지방의회위원의 의무를 위반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겸한 직의 사임을 권고하도록 함.

자. 지방자치단체의 폐지·신설·분할·통합 등에 따라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경우 최초의 지방의회 임시회는 지방의회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되는 날에 소집하도록 함(제54조제2항).

차. 지방의회위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과 지방회의의 원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 등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민간전문가 중에서 지방회의의 의장이 위촉하도록 함(제66조).

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함(제105조).

- 1)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에 대한 설치 근거가 없어 지방자치단체 간 인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이 통일되지 못한 문제가 있음.
- 2) 당선인을 보좌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인수위원회의 설치 기간, 구성 및 업무 등을 규정함.

타.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지방의회

에 보고하도록 의무화 함(제130조).

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을 도모하고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련되는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지방협력회의를 두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함(제186조).

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적법성 통제를 강화함(제188조 및 제192조).

- 1) 지금까지는 시·군 및 자치구의 법령 위반에 대한 국가의 실효성 있는 통제 수단이 없어 법령 위반사항이 해소되지 못하고 주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있었음.
- 2) 주무부장관은 자치사무에 관한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가 시정명령을 하지 아니하면 시·도지사에게 시정명령을 하도록 명할 수 있고, 시·도지사가 시정명령을 하지 아니하면 주무부장관이 직접 시정명령과 명령·처분에 대한 취소·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함.
- 3) 주무부장관은 시·군 및 자치구의회 의결이 법령에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하게 하지 아니하면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도록 함.

거.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제199조부터 제211조까지).

- 1) 지금까지는 광역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근거는 있으나,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운영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음.
- 2)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시 상호 협의에 따른 규약을 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조직·운영 등은 규약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운영과 관련한 세부 내용을 규정함.

3. 신규 지방자치법 비교¹⁾

조문	현행	개정
제1조		- 목적규정에 ‘주민의 지방자치행

1) 이병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주요내용과 의미”, 한국의회발전연구회, 「의정연구」 제27권 제1호(통권62호), 2021, 190쪽-192쪽.

조문	현행	개정
		정에 참여에 관한 사항' 추가
제4조	- 자치단체 기관구성 : 기관 분리형 (단체장-지방의회)	- 자치단체 기관구성 : 주민투표 거쳐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구성(기관분 리형·통합형 등) 변경 가능
제5조	- 매립지 관할 결정 : 매립지 관할 관련 이견이 없는 경우에도 중분 위 절차를 거쳐 결정	- 매립지 관할 결정 : 분쟁이 없는 경우 별도 심의의결 절차 생략 등 결정 가능
제6조		- 경계조정 절차 : 자치단체 간 자율 협약체를 통해 경계조정 협의 추진 - 미해결시 중분위 심의를 거쳐 조 정 가능
제11조	- 사무배분 명확화 : 지방자치법에 국가·지방간 사무배분원칙 및 준 수의무 등 미규정(지방분권법에 규정)	- 사무배분 명확화 : 보충성, 중복배제, 포괄적 배분 등 사무배분원칙 규정 - 사무배분 기준에 대한 국가와 자 치단체의 준수의무 부과
제17조	- 주민참여권 강화 : 주민권리 제한적 > 자치단체 재산과 공공시설 이용권, > 균등한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 > 참정권	- 주민참여권 강화 : 주민생활에 영향 을 미치는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주민참여 권리 신설
제19조	- 주민조례 발안제 : 단체장에게 조례안 제정, 개·폐 청구	- 주민조례 발안제 : 의회에 조례 안을 제정, 개·폐 청구 가능(별도 법 제정)
제21조	- 주민감사청구인 수(서명인수 상한) : 시·도 500명, 50만명 이상 대도시 300명, 시·군·구 200명 - 청구권 기준연령 : 19세 이상 주민 청구 가능	- 주민감사청구인 수(상한 하향조정): 시·도 300명, 50만명 이상 대도시 200명, 시·군·구 150명 - 청구권 기준 연령 : 18세 이상 주민 청구 가능(조례발안, 주민감사, 주 민소송)
제26조		- 정보공개 범위 : 의회 의정활동, 집행부 조직·재무 등 정보공개

조문	현행	개정
		의무·방법 등에 관한 일반규정 신설 - 정보플랫폼 마련으로 접근성 제고
제28조		- 자치입법권 보장 :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해 법령의 하위법령에서 위임내용·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하지 못하도록 규정
제41조	- 규정 없음 ※ 제주특별법에 근거 제주도만 의원정수 1/2범위 내 정책연구위원 운영(21명)	- 정책지원 전문인력 : 모든 지방의회에서 의원정수 1/2범위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 운영 가능 ※ 2023년까지 단계적 도입
제43조	- 지방의원 겸직금지 : 겸직금지 대상 개념이 불명확 - 겸직신고 내역 외부 미공개	- 지방의원 겸직금지 : 겸직금지 대상 구체화 - 겸직신고 내역 공개 의무화
제65조	- 지방의회 책임성 확보 : 윤리특위 설치 임의규정 - 윤리심사자문위 설치 미규정	- 지방의회 책임성 확보 : 윤리특위 설치 의무화 -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 설치, 의견청취 의무화
제74조	- 의정활동 투명성 강화 : 지방의회 표결방법의 원칙 관련 근거 미비	- 의정활동 투명성 강화 : 기록표결 제도 원칙 도입
제103조	-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 의회 사무처 소속 사무직원 임용권은 단체장 권한 ※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임용권의 일부를 지방의회의 사무처장 등에 위임 가능	-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 지방의회 소속 사무직원 임용권을 지방의회의회의장에게 부여
제105조		- 단체장 인수위 구성 : 시·도 20명, 시·군·구 15명 이내에서 임기 시작 후 20일 범위 내로 단체장 인수위 자율 구성
제164조		- 국가-지방간 협력 : 균형적 공공서비스 제공, 균형발전 등을 위한 국가-자치단체, 자치단체간 협력의무 신설
제169조	- 행정협의회 : 설립시 지방의회의	- 행정협의회 : 설립시 지방의회에

조문	현행	개정
	의결 필요 - 자치단체 간 협력에 대한 지원 근거 없음	보고로 간소화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협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 가능
제184조	- 자치단체 사무의 지도/지원 :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조언·권고·지도 가능	- 자치단체 사무의 지도/지원 :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의 조언·권고·지도에 대한 단체장의 의견제출권 신설
제186조	- 규정 없음 ※ 대통령-시도지사 간담회 운영	- 중앙지방협력회의 신설(별도 법률 제정)
제189조	- 시군구 사무 책임성 강화 : 시·군·구의 위법처분·부작위에 대해 국가가 시정·이행명령 불가	- 시군구 사무 책임성 강화 : 국가가 보충적으로(시·도가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시·군·구의 위법한 처분·부작위에 시정·이행명령가능
제198조		- 자치단체 특례부여 : 100만 이상은 특례시로 하고, 행정수요·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에 따라 행안부장관이 정하는 시·군·구에 특례 부여 가능
제9장	- 국가의 지도·감독(제166조~제172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제183조~제192조)
제10장	- 서울특별시 및 대도시 등과 세종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특례(제173조~제175조)	- 국제교류·협력(제193조~제195조)
제11장		- 서울특별시 및 대도시 등과 세종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특례(제196조~제198조)
제12장		- 특별지방자치단체(제199조~제211조)

<표 9> 지방자치법 신구비교

IV. 법 개정의 의의²⁾

2) 강재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의의와 개정법률의 주요 내용”, 경남연구원, 「경남발전」 153호, 2021, 4-5쪽.

1. 법 개정의 의의

- 현대 사회는 민주주의의 발전과 함께 지방분권이 확대되고 지역주민의 자기 결정권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
- 지방자치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영국, 미국, 프랑스, 스위스, 독일, 일본 등에서도 지방자치의 강화와 그에 따른 주민참여 확대는 세계적 추세임
- 이번 개정은 1988년 개정 이후 32년 만의 개정임
- 단체자치에서 주민자치로의 전환으로 변화하는 개정
- 2018년 문재인정부에서 자치분권종합계획에서 ‘주민주권’의 개념을 지방자치의 이념적 기초로 실현하고자 하는 것임
- 그러나 주민자치회 등의 법제화 실패로 근본적 한계
- 주민조례발안제도 개선, 주민감사청구요건 완화, 주민투표 연령 하향조정 등은 긍정적
- 앞으로도 지속적 보완이 필요

2. 법개정의 특징³⁾

1) 자치입법권 강화

- 법 제1조(목적)에 ‘주민자치’의 원리를 새롭게 명시하여 자치단체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주민의 참여권을 보장
- 예컨대 ‘주민조례발안권’(별도 법제정)을 제도화함으로써 주민이 직접 의회에 조례안의 제정, 개정, 폐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요건도 완화하여 폭넓은 주민참여의 근거 마련
- 자치단체 역량 강화 및 자치권 확대와 관련하여 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국가·지방간 사무배분 원칙과 준수 의무를 규정
- 특히, 상위 법령에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해 하위법령에서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하지 못하도록 하여 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강화

2)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

- 지방의회의 자율성 대폭 강화

3) 이병기, 앞의 논문, 192-194쪽.

-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를 위해 지방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여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
- 지방의회 인사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
- 지방의회 정례회 운영 등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의회의 권한 강화와 함께 책임성 확보를 위해 지방의원의 겸직 규제 및 윤리특별위원회 설치 의무화, 의정활동의 투명성 강화 등을 신설

3) 중앙·지방간 관계

- 민선지방자치 출범 이후 변화된 지방행정환경을 반영
- 예컨대 제9장의 제목을 ‘국가의 지도·감독’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로 변경
- ‘국가의 지도·감독’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또는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간 수직적인 의미의 지휘·통제의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로 명칭 변경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를 보다 협력적인 관계로 발전시켜 주민중심의 지방자치 구현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와 이에 따른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
-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설치하여 운영
- 자치단체 사무의 지도/지원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조언·권고·지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제출권 신설
- 반면 제189조에서 주무부장관은 자치사무에 관한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가 시정명령을 하지 아니하면 시·도지사에게 시정명령을 하도록 명할 수 있고, 시·도지사가 시정명령을 하지 아니하면 주무부장관이 직접 시정명령과 명령·처분에 대한 취소·정지 등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적법성 통제를 명시적으로 강화

3. 법 개정의 주요 내용⁴⁾

1) 주민주권 구현 관련 주요 개정

4) 하민지, “지방자치법 개정과 한국 지방자치의 의미와 과제”, 경남연구원, 「경남발전」 153호, 2021.

- 제1조 : 주민자치 원리 강화(목적규정에 ‘주민자치’ 원리 명시)
- 제4조 : 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 다양화(주민투표로 기관구성 변경 가능)
- 제17조 : 주민 참여권 강화(주민이 지방자치행정에 적극 참여할 권리 신설)
- 제19조 : 주민조례발안 제도 도입(주민이 의회에 직접조례 제정, 개·폐 청구)
- 제21조 : 주민감사 청구인수 하향 조정(시·도: 500 → 300, 시·군·구 200 → 150)
- 제21조 : 청구권 기준연령 완화(주민조례발안, 감사청구 18세로 하향)

2) 자치단체 역량과 자치권 강화 관련 주요 개정

- 제11조 : 국가-지방 사무배분 명확화(사무배분 원칙 및 준수 의무 마련)
- 제28조 : 자치입법권 보장 강화(하위법령에 의한 조례제정 범위 침해 금지)
- 제41조 :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입법, 예산 등 의정활동 지원)
- 제103조 :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지방의회 의장에게 사무직원 임용권 부여)
- 제198조 : 특례시 명칭부여 등(인구 100만 대도시에 ‘특례시’ 행정적 명칭 부여 등)
- 제5장 :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일부를 조례에 위임)
- 제10장 : 국제교류·협력근거 신설(국제기구 지원 해외사무소 운영근거 마련 등)

3) 자치단체 책임성과 투명성 관련 주요 개정

- 제26조 : 정보공개 확대(재정·조직상황, 의회 의정활동 등 정보공개 규정 신설)
- 제43조 : 지방의원 겸직금지 명확화(겸직금지 대상 구체화, 신고내역 공개 의무화)
- 제65, 66조 : 지방의회 책임성 확보(윤리특위 및 윤리심사자문위 설치 의무화)
- 제74조 : 지방의회 의정활동 투명성 강화(기록표결제도 원칙 도입)
- 제130조 : 자문기관 운영 내실화(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심의 금지, 의회보고 의무화 등)
- 제189조 : 시·군·구 사무수행 책임성 강화(시·군·구 위법처분 등에 대한 국가 보충적 관여)

4) 중앙-지방간 협력관계 및 행정 능률성 관련 주요 개정

- 제5조 : 매립지 관할 결정 절차 개선(분쟁없는 매립지 결정절차 간소화 등)
- 제6조 : 경계조정 절차 신설(지자체간 자율 조정 및 중분위 통한 절차 마련)
- 제105조 : 단체장 인수위원회 제도화(시·도 20인, 시·군·구 15인 이내)
- 제169조 : 행정협의회 활성화(행정협의회 절차 간소화, 지원 근거 마련)
- 제183조 : 국가-지방 간 협력(국가-자치단체, 자치단체간 협력의무 신설)
- 제184조 : 자치단체 사무에 대한 지도·지원(단체장의 의견제출권 신설)
- 제186조 : 지방자치단체의 국정참여기구 제도화(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
- 제12장 :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운영 구체화(규약·기관구성·운영 규정 마련)

4. 개정 지방자치법 평가⁵⁾

1) 긍정적 평가

(1) 주민자치의 원리 반영

- 제1조(목적)에서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라는 문구 추가
- 제13조(주민의 권리)는 타 조항 신설로 인하여 17조로 변경되면서 1항으로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를 신설
- 주민 권리의 범위를 단순히 공공시설 이용이나 참정권 수준에서 지방행정의 의사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참여까지 대폭 확대
- 제26조(주민에 대한 정보공개)를 신설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집행기관의 조직, 재무 등 지방자치에 관한 정보를 주민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범정부차원의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

(2) 주민직접참여제도의 개선

- 주민조례발안제도의 도입
- 제19조(조례의 제정과 개정·폐지 청구)의 1항에 ‘주민’이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2항에 청구권자, 청구대상, 청구요건 및 절차에 대해서 ‘따로 법률로 정한다’라고 개정
- 개별법으로 주민조례발안법을 제정하여, 주민들이 직접 조례를 발의할 하는

5) 최승제,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 주민주권 구현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021, 317쪽.

제도는 장치가 보장

- 제20조(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의견 제출)를 신설하여 주민들이 단체장을 통해서 규칙에 대한 제정과 개정, 폐지할 수 있도록 함
- 주민감사제도의 개선
- 제21조(주민의 감사 청구)에서 청구인 수를 시·도는 500명에서 300명,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에서 200명, 그 밖의 시·군·자치구 200명에서 150명 이내로 하향 조정
- 청구권 기준연령은 기존 19세에서 18세로 하향
- 지방정부 기관 구성에 대한 결정권이 주민들에게 부여
-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의 특례)조항을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방법을 비롯해서 행정과 의회의 구성형태를 결정할 수 있고, 기관 구성을 변경하는 경우에 주민투표를 의무화
- 기존 지방정부의 강시장-약의회 구조로 인한 기관이 대립된 형태에 대한 개선

2) 현행 지방자치의 한계⁶⁾

- 재정분권의 취약성 :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대 2의 수준
- 입법 자주성의 취약성 : 조례의 제정을 법령 범위로 제한
- 법령이 대통령령뿐만 아니라 총리령, 장관의 부령까지 포함
- 주민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권, 소민소환, 주민투표 등 직접참여제도가 있으나, 주민들이 실제 입법과 정책에 개입하거나 선출직을 견제하기는 어려움
- 시·군·구나 읍·면·동 단위에서 주민들이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제와 주민자치위원회 및 주민자치회 등의 제도가 도입되어 있지만 아직 초보 단계

3) 개정 지방자치법의 문제점

(1) 중앙과 지방간의 협력관계의 문제

- 상하관계가 아닌 병렬관계로서의 정립을 위해 협력의무 규정 신설
- 협력의무 사무에 대한 규정이 없고 선언적 의미가 큼
- 국가감독의 범위와 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성

6) 최승제, 앞의 논문, 297쪽.

(2) 단체자치와 주민자치의 문제

- 주민의 의사에 따른 주민자치와 국가로부터 독립적인 관계로서의 단체자치는 선택적 관계가 아니라 보완적 관계가 되어야 함
- 이는 중앙과 지방의 역할 분담을 통해 실현 가능함
- 자치분권제도, 사전협의제 등 중앙과 지방간의 역할 조정제도의 필요성

(3) 자치권과 책임성의 문제

- 지방정부의 사무, 입법, 조직, 재정에서의 자율성 가운데 사무배분의 원칙이 신설되었으나 그 외에는 변화가 없음
- 지방의회의 자율성 강화를 위한 중앙과 지방간의 권한배분은 없고 지방정부의 집행기관과 의결기관간의 권한재분배만 존재
- 정보공개 등은 주민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는 효과가 있으나 지방자치권 보장을 위해서는 여전히 취약함

(4) 지방정부간의 협력의 문제

- 특별지방정부제도의 도입
- 특별지방정부의 구성요소로서의 주민대표성이 불명확함
- 지방정부 내의 기관구성의 다양성에 대한 내용이 아직 불투명

(5) 정책전문인력 운영의 문제⁷⁾

-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정원을 재직의원 총수의 1/2로 규정하고 있어 지방의원에 대한 개별적 지원이 사실상 불가능함
-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지방의회의 자율성 강화의 역할을 하기 힘들.
-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상임위원회에 배치할 경우 지방의회 사무 미분화로 인해 나타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전문성 제고의 문제 해결이 어려움
-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조례에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함

7) 이동영, “지방자치법 개정과 지방의회의 변화”, 한국자치학회, 「공공정책」 Vol.183, 2021, 24쪽.

(6) 지방의회 직원의 문제

- 지방의회에 두는 직원의 수를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해 실효성이 떨어짐
- 특히 직원 수의 기준이 지방의회 사무의 내용에 기초하기보다는 지방의원의 숫자에 기초하고 있어 실제 사무에 비해 필요한 기구나 인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
- 시·도의회는 경우 3급 실·국장을 두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인사권 독립 이후 4급 담당관으로서 2급 처장까지의 순차적 승진이 불가능
- 인사권 독립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에 두는 직원의 수를 조례로 정하도록 한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한편 지방의회의 사무 특성에 맞게 기구와 직원을 둘 수 있도록 자율성을 강화하고, 시·도의회에서 3급 실·국장을 둘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

5. 개선방안⁸⁾

1) 주민주권 구현의 근거조항의 보완

- 지방자치의 주체는 주민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한 내용이 필요
- 제1조 규정에서 보완

2) 지방정부 기관구성 다양화의 보완

- 제4조 규정에서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주민자치기본법 등의 필요
- 왜 조례로는 안되는가

3) 자치입법권의 보완

- 법령의 범위라는 제한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 헌법 제40조 입법권의 주체에 지방의회를 포함하는 방안의 가능성
- 헌법 제118조 법적 구속 범위가 전국적인 경우 국회, 그 외에는 지방의회도

8) 박기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평가와 보완적 대안”,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재정」 2021권 1호, 2021, 104-111쪽.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의 가능성

- 헌법 제117조 지방자치법의 ‘법령’의 범위를 ‘법률의 범위’로 개정할 필요성

4) 자치조직권의 보완

- 자치조직권은 자치권의 본질적인 요소
- 제123조 조직에 대한 수적인 제한이 엄격
- 지방정부간의 특수성 등이 무시되고 있음
- 예컨대 농촌과 도시, 도농복합 등의 다양성이 무시됨
- 법에서는 상한선을 두고 조례로 수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안이 필요

5) 특별자치단체의 보완

- 기초지방정부의 단계를 넘어서는 광역행정수요가 발생
- 기초지방정부간 협력체계의 필요성 대두
- 지방자치단체조합과 특별자치단체의 구분의 모호성이 존재
- 행안부 장관의 승인사항이라는 것은 자율성 강화의 취지에 어긋남

6) 지방의회 역량강화의 보완

- 지방의회의 인사권과 독립성을 강화한다고 하였으나 전문인력 등의 채용, 교육훈련 등의 경우 집행부를 활용하거나 위탁하는 경우와 자체 독립적 채용으로 이원화되어 있음
- 전문인력의 수적 제한으로 인해 실효성이 떨어짐
- 지방의회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조례를 통해 탄력적으로 유지하게 할 필요성

7) 주민자치회의 보완

- 법 개정 과정에서 삭제
- 현재는 지방분권법에 규정되어 있음
- 주민자치회의 제도화가 필요
- 주민자치기본법 제정 움직임
- 현재 주민자치기본법안이 소관위 심사 중이며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세 개 소관위에 접수된 상태임

- 최근 주민자치법제화 전국네트워크에서 입법을 위한 서명운동 진행중

8) 제도적 과제⁹⁾

(1) 주민조례발안법 제정

- 조례의 제정과 개정, 폐지를 단체장에게 요청하고 발의는 단체장에게 하던 것과 달리, 개별법은 주민과 의회가 직접 발의
- 발안에 필요한 서명인수의 적절성, 행정의 개입에 대한 차단, 발의한 조례에 대한 결정과정에 주민참여 보장, 주민투표제도와의 연결 등을 반영
- 주민조례발안법이 지난 9월 통과되어 개정 지방자치법의 시행과 동시에 시행될 예정임

(2) 주민투표법 개정

-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 심사 중

(3)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개정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 심사 중

V. 지방자치법 개정과 수원시 의회와의 관계

1. 특례시 지정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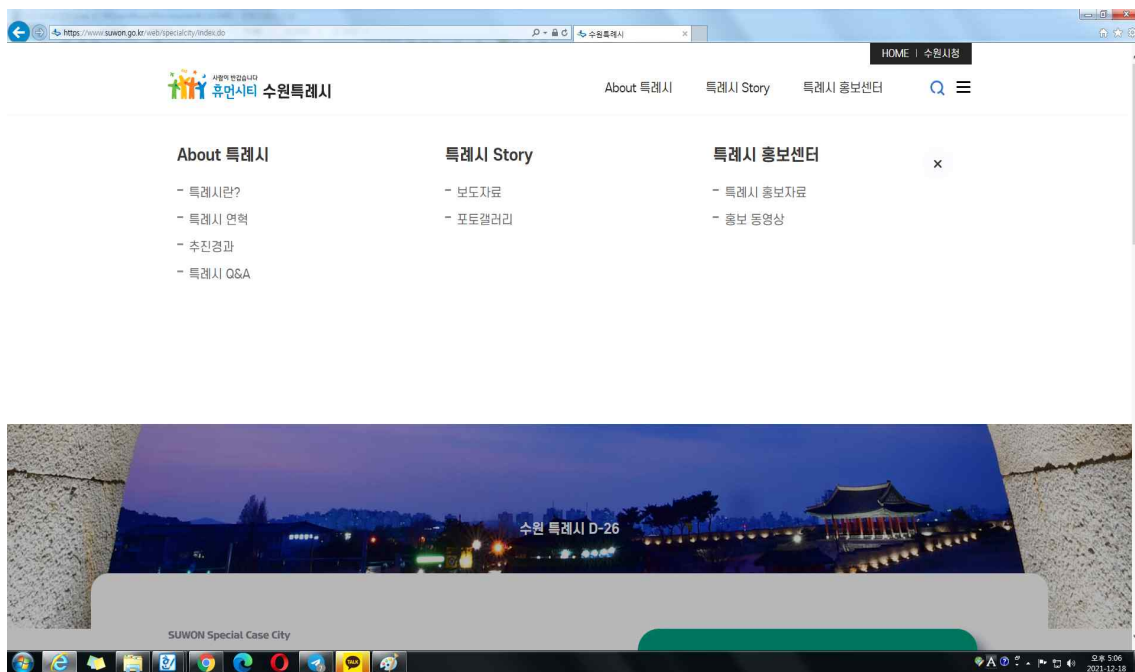
- 수원시는 현재 홈페이지를 만들어 특례시 지정에 대비한 홍보를 진행하고 있음.
- 홈페이지 주소 <<https://www.suwon.go.kr/web/specialcity/index.do>>

9) 최승제, 앞의 논문, 319쪽.



<그림 2> 수원 특례시 홈페이지

○ 홈페이지 구성은 다음과 같음



<그림 3> 수원 특례시 홈페이지 사이트맵

2. 수원시 의회 의원의 의견

- 11월 1일 중간발표회, 12월 14일 최종발표회 두 차례 수원시의회 의원 및 사무국과 발표회를 진행하였음.
- 11월 1일 중간발표회는 지방자치법 개정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수원시 의회에서 미리 준비하여야 할 것 등에 관하여 논의하였음.
- 12월 14일 최종발표회는 수원시의회 기본조례와 회의규칙 등과 관련하여 정비해야 할 것을 중심으로 논의하였음.
- 두 차례의 발표회를 통해 수원시의회 운영 연구회 의원들의 제시한 의견은 다음과 같음.(가나다 순)

<김영택 의원>

- 기본조례가 운영조례인 셈이니 잘 만들어 보자.
- 특례시 지정 후 주민자치회는 어떤 위상을 가질 지에 대해 고민을 해봐야 한다.
- 주민중심자치의 구현은 무엇인가,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등 고민해야 할 것들이 많다.
- 무엇을 어떻게 해야 상위법과 조례가 잘 조화를 이루면서 주민자치를 이루어낼 수 있을지 잘 고민해 보자.
- 지방자치법 개정 내용을 전체적으로 수원시의회 전체 의원들 대상으로 설명회를 하고 의견을 모아 보자.

<송은자 의원>

- ‘주민자치회’ 보강 제도화해야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
- 의회와는 별개로 행정적으로도 주민직접자치를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이 많을 것이므로 미리 준비하자.
- ‘회의규칙’에서 발언회수와 5분 발언 등의 제한 등을 완화할 방안은 없는지 찾아보자.
- ‘자동투표시스템’ 도입에 관해서도 고민해 보자.

- 수원시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특례시를 만들어보자.

<유재광 의원>

-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수원시가 특례시가 되고 나면 할 일이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
- 의원들이 앞장에서 수원시를 특례시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일을 한 번 만들어 보자.
- 기본조례와 회의규칙 등을 잘 정비해서 혼란 없이 다음 의회로 잘 이어가 보자.

<이종근 의원>

- 수원시가 특례시가 되었을 때 의회뿐만 아니라 행정도 함께 준비할 것이 많을 것이다.
- 의회와 행정이 잘 협조해서 수원시를 주민자치의 모범으로 잘 반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자.
- 전체 의원들과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 이후에 신속하게 의회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미리미리 확인하고 준비하자.

<조미옥 의원>

- 개정 지방자치법이 2022년 1월 13일 시행이라 다음 지방선거에서는 적용이 어려울 것이라 예상한다.
- 의원 수 조정이나 선거구 확정 등을 미리미리 준비해서 이번 선거는 아니라도 다음 선거에서 절 적용할 수 있도록 하자.
-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것도 좋지만 요건을 잘 마련해서 일반 민원성 요구와 주민자치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의안 등이 잘 구분될 수 있도록 하자.
- 시민들의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조례 정비 방안을 잘 마련해 보자.

<최찬민 의원>

- 개정 지방자치법으로 잘못되면 무늬만 특례시가 되고 아무런 실제 변화가 없을 수 있다.

- 행안부와 지방정부의 관계를 잘 정립할 수 있도록 요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 개정 지방자치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아직 발표되지 않은 시점에 미리 예상해서 발표와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잘 하자.
- 기본조례와 회의규칙을 중심으로 개정안을 잘 마련해 보자.
- 교섭단체 구성뿐만 아니라 당정협의회 등 의회 내에서 필요로 하는 논의 구조를 조례에서 명시하고 적절하게 운영하는 방안도 만들어 볼 수 있겠다.
- 의회 내에 다양한 조직이 만들어지면 그에 따른 행정적 지원도 따라야 한다.
- 조례를 중심으로 운영해야 하는 만큼 조례 개정을 통해 수원시만의 주민자치를 잘 만들어 보자.

<한원찬 의원>

-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주민자치가 활성화한다고 하더라도 중앙과 지방은 능력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 권한에서나 재정적으로나 구조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잘 보완하는 방안을 찾아봐야 한다.
- 조례가 만능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고 조례의 한계를 극복하고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만들어낼 방안을 찾아보자.
- 지금 특례시에 대해 정해진 것이 실제로는 아무 것도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 특례시가 되었을 때 세법 상의 문제를 포함하여 다양한 중앙정부의 법적 제한을 조정하여 실질적인 특례시의 모범을 만들어 보자.

<의회사무국>

- 표준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무국에서 행정적으로 준비하기가 쉽지 않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행정적으로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

제3장 해외의 지방자치

- 지방자치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영국, 미국, 프랑스, 스위스, 독일, 일본 등에서도 지방자치제도에 대해 살펴봄

I. 영국¹⁰⁾

- 영국과 한국은 전반적인 법률체계나 사회·문화적 배경이 달라서 비교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음. 특히 지방자치와 관련한 부분에서도 지방자치의 근거를 간략하게라도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한국과 달리, 불문헌법 국가인 영국은 지방자치를 보장하는 헌법상의 근거 규정이 없음. 그러나 영국과 한국의 지방자치 관련 제도는 유사하게 보이는 측면도 상당부분 있음.
- 첫째, 한국의 지방자치가 제도적 측면에서 중앙종속형을 유지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국의 지방제도 역시 중앙종속형을 유지하고 있음. 영국은 한국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의 긴 지방자치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국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권한은 웨스트민스터 의회에 집중되어 있음.
- 둘째, 영국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간 권한 이양의 문제와 영연방의회와 잉글랜드지역과의 자치문제가 함께 고려되고 있는데, 이는 현재 우리의 제도와도 유사한 측면이 있음. 즉, 우리의 경우도 중앙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 간의 문제, 중앙정부와 그 밖의 자치단체와의 문제가 함께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임.
- 영국에서 각 지방정부와의 권한이양과 관련한 문제는 한국에서 제주특별자치도와 중앙정부 간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시사점을 줄 수 있으며, 웨스트민스터 의회와 잉글랜드 지역 간의 자치권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들은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에서의 문제에 시사점을 줄 수 있음.
- 이는 특례시 도입으로 인해 특례시에도 적용할 여지가 있음.

10) 장은혜, 「주요 외국의 지방자치제도 연구 - 영국 -」, 한국법제연구원, 2018에서 요약.

- 셋째, 자치입법과 관련해서도 유사한 측면이 많음. 영국에서 지역특별법과 관련한 문제들은 한국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관련한 부분과 비교 검토할 수 있음. 영국에서 지역특별법은 자치단체의 자치 영역을 확장시켜 주는 역할을 하지만, 조례와는 달리 의회법이기 때문에 중앙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며, 해당 법률에서 규정된 범위 안에서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음. 조례(By-Laws)의 유효성 요건으로 제시되는 세 가지 요건인 합리성, 명확성, 법률적합성은 한국에서 조례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할 때 제시되는 기준과도 유사함.
- 우리나라와는 다른 발전과정을 가진 지방자치제도이지만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 지점을 찾을 수 있음. 즉, 긴 지방자치의 역사를 가진 영국이지만 여전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권한 문제가 연구되고 있고, 지방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자치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음.
- 불문헌법 국가라는 편견 때문에 지방제도 역시 관습법과 판례에 의존하여 운영 될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영국의 지방제도는 법률 단계에서 살펴보면, 우리보다도 더 세세하게 성문의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음. 성문법 국가인 한국이 지방제도와 관련한 법률 체계나 내용이 영국보다 상당히 적다는 것은 우리의 지방자치의 제도적 측면이 빈약하다는 반증일 수도 있음.
- 한편, 영국에서 지방정부의 자치권 확대의 큰 걸림돌로 지적되는 부분은 지방재정과 관련한 부분임. 정치·문화적으로 지역의 풀뿌리민주주의가 정착되어 있는 영국이지만, 결국 큰 틀에서 중앙의회의 통제 하에 있는 근본 원인은 재정 종속에 있다는 것이 영국 내의 지방자치 관련 연구자들의 견해임. 이 또한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와도 유사함.
- 영국에서 지방자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주장이 있음. ‘불문헌법 국가인 영국에서 지방자치를 위하여 반드시 헌법적 근거나 법률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정말 중요한 문제들은 헌법적인 것이 아니라 정치적이며 문화적인 것이기 때문에, 헌법적인 근거 마련보다는 지방자치에 대한 대중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그것임. 그렇지만 이러한 인식에도

불구하고 성문의 규정으로 지방자치 또는 지방정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영국의 법체계가 보완될 필요성이 있다는 문제의식 또한 영국 내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지방자치의 정치·문화적 전통이 확립된 영국에서조차도 지방자치의 보장을 위한 성문법체계 확립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것은, 지방자치에 있어서는 정치·문화적 요소뿐만 아니라, 법제적 보장의 필요성도 중요함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한국의 경우, 지방자치의 정치·문화적 분위기를 성숙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동시에 이를 보완하기 위한 법제적 발전 방안이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야 하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음.

II. 미국¹¹⁾

1. 다양한 유형의 지방자치 정부 도입

- 미국 지방자치는 상향식 자치, 연방정부 우위의 자치라고 일컬어짐. 이는 무엇보다 미국에서 지방자치의 연혁과도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연방수정헌법이 지방자치에 대해 명문화된 규정을 갖고 있지 않는 등 지방자치는 연방 차원의 주요한 과제라기보다는 지역 공동체의 현안이었기 때문임.
 - ‘자치’의 정도는 차이가 있지만 카운티, 시티, 타운 등 여러 층위의 다양한 지방정부들이 부여받은 권한에 따라 ‘자치’를 실행하고 있음.
- 다양한 정부 유형에 의한 지방자치가 있음.
 - 시티와 같은 법인형(cooperative municipal) 자치정부
 - 카운티와 같은 ‘비법인형(non-cooperative), 주 정부의 지역 행정 단위’
 - 교육구 등 특별자치구
- 다양한 권한과 법적 지위를 가진 지방정부조직 도입은 우리나라의 특례시 도입을 위해서도 검토가 필요함.
 - 지방정부 서비스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의 통제가 가

11) 윤인숙, 「주요 외국의 지방자치제도 연구 - 미국 -」, 한국법제연구원, 2018에서 요약.

능한 방식으로 설립될 수 있다면 비법인화된, 중앙정부에 속한 행정단위로의 지방정부 선택도 가능함.

- 미국 카운티와 같이 주민투표로 자치단체장과 주요 공무원을 선출하고, 지방의회를 설치하지 않는 방식도 가능함.
- 중앙 정부의 행정단위 기능을 하는 지자체는 중앙정부 관할에 속하지만, 자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수평적이면서도 협력적인 조직체계 및 정부간 (intra-governmental) 관계수립이 중요함.

2. 지방자치 법규의 법률적 효력 강화

○ 미국은 홈-룰 헌장(차터)에 지방자치사무에 관한 최고규범으로써의 법률적 효력을 부여하고 있음.

- 주 정부를 매개로 하는 연방제 지방자치의 특성상 미국 연방수정헌법은 지방자치 규정을 담고 있지는 않지만 각 주의 주 헌법들은 지방자치 및 홈-룰 헌장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음.
- 주 헌법은 헌장을 통해 설립된 카운티 정부에 대해서 주 법률과 불일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정부 법률(local ordinances)을 제정·집행할 수 있는 자치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음.
- 대표적인 예가 캘리포니아 헌법 제11조 제3항(a)임.

○ 차터 시정부는 지방정부사무(자치사무, municipal affairs)에 관해서 지방정부 법률과 규칙을 제정, 집행할 수 있음.

- 지방정부에 속하는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주 법률의 권한도 행사할 수 없으며, 주 헌법에 의해서만 ‘차터 지방정부의 자치권한’을 제한할 수 있음.
- 홈-룰 차터에 대해 지방자치사무에 관한 최고 규범성을 주 헌법 차원에서 부여함으로써,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고 있음.
-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자치입법권한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규정에 따라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담, 벌칙의 부과에 개별법령의 위임이 없이는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자치입법권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법률체계에 따라 포괄적 위임은 불가능하고, 중앙정부에 의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위임되어야 하며, 현행 지방자치법 제9조에 의한 지방자치사무도 예시적으로 직접적인 사무 처리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지방자치관련 기본법에 자치사무 최고 규범으로의 권한을 부여하고,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함.

3. 자치 입법·행정의 균형

<샌프란시스코 사례>

- 샌프란시스코 현장에 나타난 샌프란시스코 시·카운티의 지방자치체계의 특징은 구성과 운영의 민주성, 권한 간의 견제와 균형, 행정 조직과 내용의 자율성, 주민참여제도, 상세한 재정 관련 제도, 고용계약의 당사자로서의 지위 등으로 정리할 수 있음.
- 샌프란시스코 시·카운티의 경우 주민이 입법, 행정, 사법기관에 직접 관여할 수 있는 범위가 상당히 넓게 부여되어 있음.
 - 시장 및 의원 외에도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직위는 시 법무관, 지방검사, 평가-기록관, 국선변호인, 보안관, 출납관,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다양함.
 - 또한, 행정에 대한 정책 기획과 자문, 평가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위원회 조직의 경우 주민이 선출한 시장과 의원이 임명함.
 - 간접적으로 구성의 민주성이 담보되어 있다 할 것임.
- 입법권과 행정권 간의 견제와 균형 관계가 정교하게 마련되어 있음.
 - 샌프란시스코 현장은 한편으로는 현장에서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권한은 의회의 권한에 속한다는 점을 명시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의회는 조사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에는 행정에 간섭하지 못한다는 원칙 또한 밝히고 있음.
- 조례 입법절차와 관련해서도 의회와 시장의 권한이 균형 있게 배분됨.
 - 의회뿐만 아니라 시장 역시 조례안을 제출 가능함.
 - 의회가 의결한 조례 및 예산에 대하여 시장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 시장의 거부권 행사 시 의회는 재의결로 이를 확정할 수 있음.
 - 인사와 관련하여 의회와 시장의 견제와 협력이 병존함.
 - 예컨대 시장의 시 행정관 임명 시 의회의 인준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점은 시장의 인사권에 대한 의회의 견제권 행사의 일환이고, 행정조직의 중요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위원회 위원을 시장과 의회가 모두 임명한다는 점은 협력적 측면이라 할 것임.

- 현장의 입법·행정·사법 분야 규정의 상세함은 정도의 차이가 있음.
- 입법부 규정의 경우 의회의 구성과 의원의 보수·임기 등 캘리포니아 주 헌법에서 현장 규정사항으로 명시한 내용을 충실히 담고 있음.
- 행정부 규정의 경우 주 헌법상 특별한 제한이 존재하지 않으며 시·카운티 행정 조직과 권한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광범위한 자율성에 기반하여 상세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분량면으로도 행정부 분야가 헌정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음.
 - 행정부 규정의 경우 조직 측면에서 여러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고, 특히 교통·운송, 공공시설, 도서관 등 주민생활에 밀접한 영역에 대하여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사법부 규정의 경우에는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른다는 규정 외에 재판부의 구성이나 재판작용과 관련한 규정은 찾을 수 없고, 지방행정 영역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는 보호관찰에 관하여만 규정을 두고 있음.
 - 지방자치의 자율성이나 다양성보다는 절차적 엄밀성과 보편적 권리보장이 중시되어야 하는 사법 영역의 특성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4. 주민 참여 강화

- 직접민주주의 제도가 매우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민 만 큼 샌프란시스코 현장 역시 주민발안, 주민투표, 주민소환이라는 직접민주주의 제도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음.
 - 의회가 주민에 대하여 정책에 관한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에 회부하는 제도가 대표적임.
 - 주민의 직접 참여에 관한 권한은 상당히 강하게 조장되고 있음.
 - 주민발안으로 통과된 안건은 거부권 행사대상이 될 수 없고 의회도 이를 번복하는 입법행위를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주민발안에 대하여 일반입법보다 우월한 지위를 부여하고 있음.
 - 전체 주민이나 전체 유권자가 아닌 직전 시장선거에서 모든 시장 후보자들의 득표를 합산한 수를 분모로 하여 일정 수 이상의 서명을 기준으로 함으로써 주민투표에 회부될 수 있는 기준을 완화하여 절차적으로도 참여의 기회를 확

대하고 있음.

- 이와 같은 직접민주주의제도 외에도 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명시하고, 정보 공개와 관련한 조례의 제정을 요구하며, 예산 심의 과정에서 공공대중의 참여절차를 의무화함으로써 일상적인 참여의 통로도 제공하고 있음.
- 샌프란시스코 현장은 예산 및 재정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음.
 - 예산안 작성과정에서 세입 및 세출의 평가에 관하여 사전평가를 거치도록 함.
 - 재정균형을 고려하여 수정 가능한 장기 계획을 세우도록 함.
 - 특히 시·카운티가 특정 개인이나 기업에게 공공시설의 사용권 또는 공공역무의 독점적 판매권을 부여하는 행위인 프랜차이즈부여 행위의 경우 시·카운티의 채권 발행을 통한 재정부담에 대하여 시민이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정에 관한 주민의 직접 통제제도도 두고 있음.
- 샌프란시스코 현장의 경우 지방자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매우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음.
 - 샌프란시스코 현장이 권한 간의 견제와 균형을 위한 정교한 제도를 두고 있는 점, 위원회 조직을 통한 행정 거버넌스의 충실화를 도모하고 있는 점, 직접민주주의 및 주민참여를 위한 여러 단계의 제도들을 두고 있는 점 등은 우리나라도 고려할 만한 제도임.

III. 프랑스¹²⁾

1. 행정상 분권인 프랑스 지방자치 제도의 의의

- 프랑스에서 이해하는 지방분권은 단일국가라는 국가형태에서 중앙과 지방의 행정조직의 원칙으로 지방분권에 입각한 국가와 지방 그리고 지방간의 권력의 행사를 배분하는 것을 뜻함.
- 대부분의 프랑스 문헌에서 지방분권을 행정적 분권으로 기술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행정(조직)법상의 분권원칙으로 소극적으로 해석하는 것 경향이 있음.
- 그러나 여기서 행정적이란 의미는 지방분권은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제

12) 전훈, 「주요 외국의 지방자치제도 연구 - 프랑스 -」, 한국법제연구원, 2018에서 요약.

정권의 자주성(독자성)이 갖는 정치적 의미에서 찾아야 한다고 의미로 보는 것이 타당함.

- 다만 프랑스에서 자치명령제정권은 앙리옹 드 판세이(H. de Pensey)와 부졸(M. Boujol)과 오비(M. Auby)교수가 주장한 헌법의 제4권력인 지방권력으로 이해할 수는 없음.
- 단일국가의 주권의 불가분성과 법률제정의 국가의 독점이라는 점에서 보면 결국 행정권의 입법작용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봐야 함.
- 지방분권의 정치적 의미는 헌법에서 국가조직의 원리로 지방분권을 직접 밝히든 아니면 지난 정부의 개헌안에서처럼 이를 지향한다고 밝히든 간에 헌법 제1조에 등장하였다는 것 자체가 국가가 자신과 마찬가지로 일반권한조항을 가진 민주적 선거로 구성된 지방권력단체의 존재와 이들과의 권한배분을 인정하고 있다고 봐야 함.
- 헌법개정권자들이 국가형태를 단일국가 혹은 연방국가 방식을 선택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차이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전체와 그 구성원간의 입법권의 배분과 그 집행에 대한 법적 통제와 행정상 후견의 태양은 개헌 이후의 입법적 과제임.

2. one point 또는 전면적인 헌법 개정과 지방자치제도 설계

-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에 관한 논의는 지난 정권하에서도 심도 있게 논의된 바 있음.
- 당시의 유력 후보로 거론되었던 정치인들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신분을 보유했던 것도 한 이유가 될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에 대한 개혁의 요구가 그만큼 전국적(혹은 범(凡)국민적)으로 컸기 때문임.
- 프랑스의 경험을 통해 알 수 있지만 입법과 개헌을 통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틀을 바꾸고 난 뒤에 좀 더 정교한 조정 작업을 거쳐 지방행정계층의 조정과 지역에서의 공공서비스의 균등하고 공정한 혜택을 지역의 차별 없이 제공하는 것은 시대적 조류라 할 것임.
- 헌법은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는 도가니이기 때문에 꼭 모든 사항을 한 번에 담을 필요는 없지만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에 관한 사항은 원 포인트 개헌의

대상으로 용이한 측면이 있음.

- 이미 지방분권 개헌의 자료는 충분히 축적되어 있고, 프랑스 지방분권 헌법을 모델로 한 정부의 헌법개정안이 발의된 적도 있음.
- 기존의 개헌안 수준이라도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위한 개헌의 필요성이 커짐.
- 프랑스에서 지방자치제도 개혁을 위한 여러 보고서들은 개혁과제의 당위성과 핵심적인 소명을 담고 있어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음.

IV. 스위스¹³⁾

- 스위스 지방자치제도는 연방주의적 요소를 기반으로 13세기 동맹회의를 시작으로 헬베티아공화국, 이후 1848년 연방헌법이 탄생할 때까지 오랜 역사와 경험을 통해 주와 게마인데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여 아래로부터의 의사결정이 가능한 자치를 실현하고 있음.
- 국토면적이 작고, 각 지역별 언어권별 역사와 종교 그리고 문화가 각각 다름에도 불구하고 사회통합을 이룩하고 스위스라는 국명아래 연방국가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힘은 주민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기반이 되는 민주주의 운영에 있다고 할 수 있음.
- 주민 개인뿐만 아니라 일정수의 주민동의를 얻을 경우, 주민발안, 주민소환, 주민투표제와 같은 다양한 주민참여제도를 활용하여 지역의 입법 및 행정 분야에 대한 의견을 직접 반영하고 있음.
- 이 같은 직접민주주의적 요소들은 지역의 중요정책 및 입법사항에 대한 자기지배의 정당성을 높여주기 때문에 그 이행에서도 책임있는 주민의식을 갖게 함.
- 또한 주와 게마인데의 주민총회에서 유권자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성과여부를 공개하고 그 결과를 토론하기 때문에, 행정에서도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음.
- 스위스식 지방자치제도에서 이 같은 직접민주주의적 요소들은 오랜 역사적 전통과 정치문화 속에서 형성된 것으로서 연방국가를 보다 견고하게 발전시키는 토대가 되었음.

13) 배건이, 「주요 외국의 지방자치제도 연구 - 스위스 -」, 한국법제연구원, 2018에서 요약.

- 무리한 주민발안과 잦은 주민투표로 인해 중요한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선거 및 투표와 관련된 행정비용이 증가하여 부담으로 작용하는 단점도 있음.
- 주민총회가 열리는 경우, 실제 총회에 참석해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주민의 숫자는 전체 유권자의 과반이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민총회라는 의결기관은 주민의 총의가 직접 전달될 수 있는 의사결정구조를 형성하는 매체는 맞지만, 총회에서 결정된 투표결과가 주민 전체의 총의를 진정으로 대변한다고는 할 수 없음.
- 따라서 직접민주주의적 방식에 따른 지방자치제도의 운영이 자치실현과 관련해 무비판적인 대안일수는 없음.

- 스위스식 직접민주주의에 기반한 지방자치제도에서 보다 중요한 점은 주민이 직접 결정한다는 의결방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사결정과정에서 충분한 기회와 정보가 주민 모두에게 제공되고 소수보호를 전제로 한 의결을 통해 결정결과가 사회적으로 수용되는 절차와 과정에 있음.

- 과정중심적 차원에서 보면, 주와 게마인데의 기관구성 및 주요 정책결정이 합의제 방식을 따르는 점은 자치실현이라는 목표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게 함.
- 이 같은 합의는 다양한 의사주체의 참여를 보장하는 민주적 절차임.
- 또한, 소수그룹에 대한 배려와 지원을 기반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 조직적 차원에서 본다면 연방차원에서 주를, 주차원에서는 게마인데를, 그리고 지형적으로 열악한 산악지역, 레토로만어처럼 소수언어를 사용하는 언어공동체, 그리고 정치적 소수에 이르기까지 그 대상은 매우 다양함.
- 다수의 합의가 모든 정책을 결정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소수 역시 합의과정에 참여하여 다수와 함께 대안을 논의하기 때문에, 의결과정의 민주성은 주민의식과 책임성을 고취시킬 수 있음.
- 또한 의사결정과정에서 지역 내 모든 의결주체들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으므로 그 결과에 대한 수용성도 높음.
- 따라서 지역 내 자치현안에 대한 결정이 민주적 합의과정을 거치면서 주민의 책임을 바탕으로 목표달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룰 수 있음.

- 스위스 지방자치제도는 연방-주-게마인데 간 분권화 정도와 방식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를 실현시키고 효과적으로 운영하게 만드는 실체임.

- ‘참여’라는 관점에서 보면 연방과 주의 중요의사결정과정에서 주와 게마인데의 직접적인 의견개진이 가능하며, 그 승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였음.
- 주와 게마인데 차원에서 보면, 이 같은 참여는 예산에서부터 입법 및 행정에 이르기까지 주민이 직접 만들고 참여하는 지역운영이라는 모습으로 실현되고 있음.
- 결국 가장 본질적인 자치실현의 주체는 결국 ‘주민’에 있으며 스위스식 지방자치제도를 토대로, 향후 주민참여를 통한 지방자치제도의 변화를 논의해야 함.

V. 독일¹⁴⁾

- 독일의 지방자치제도는 특유의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발전해 왔음.
- 동.서독의 통일, 유럽의 통합과 유럽연합의 탄생 등으로 독일 지방자치제도도 큰 변화를 경험하고 있음.
- 특히 유럽연합의 경쟁법 분야나 보조금지원에 대한 감독 등은 공공서비스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생존배려 영역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또한 종래 국가의 독점사업은 점차 유럽법의 영향으로 자유화 및 민영화하고 있음.
- 공적 과제의 위임·위탁이 증가하고 있는데, 지방자치의 관점에서 공적 과제의 민영화가 허용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고 있음.
- 특히 이러한 공적 과제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인 경우가 문제임.
- 또한 행정의 현대화를 위해 일찍이 독일에서는 신공공관리가 강조되어 주민을 고객으로 생각하는 사고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최근 연방의 입법자에 의한 위임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는 경우가 늘고 있고, 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충분하지 않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음.
- 최근 독일의 지방자치제도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음.
- 독일은 그 사이 두 차례에 걸쳐 연방주의개혁을 추진하였고, 여기에서 연방과 주(란트) 사이의 사무분배와 입법권 분배 등이 주요한 쟁점이 되었음.
- 독일 지방분권에 있어서 재정자주권의 확보는 핵심적 요소임.

14) 정남철, 「주요 외국의 지방자치제도 연구 - 독일 -」, 한국법제연구원, 2018에서 요약.

- 독일의 지방분권에 관한 논의에서 연방과 주(란트) 사이의 재정불균형이 중요한 문제가 되었음.
- 현실적으로 독일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노령화와 인구감소 등의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지방자치를 위협하는 요소이기도 함.
- 그리고 의사소통수단의 변화로 인해 시민참여제도도 큰 문제가 되고 있음.
- 지방선거에서의 주민참여율이 낮아지고 있는데, 정치무관심을 반영하고 있는 바, 주민발안이나 주민참여 등의 직접민주제적 요소가 공익적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 경우에는 오히려 리스크를 야기할 수 있음이 지적되고 있음.

○ 독일에서는 연방과 주(란트) 사이의 입법권 배분에 관한 문제가 있지만, 게마인데 자체의 자치입법(조례)은 법률유보의 원칙과 법률우위의 원칙을 준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규범체계성을 견지하고 있음.

- 연방과 주(란트)의 법률 사이의 관계도 명확함.
- 조례는 의회가 제정한 법률 외에도 법규명령에 위배될 수 없음.
- 이러한 체계는 규범통제제도를 통해 유지되고 있으며 추상적 규범통제제도 뿐만 아니라 구체적 규범통제제도도 인정되고 있음.
- 위헌·위법인 자치입법에 대한 객관적 통제장치를 마련하고 있음.
- 또한 독일 행정법원법 제47조에는 행정소송에 의한 규범통제제도가 인정되어, 위헌·위법인 조례에 대한 권리구제수단도 확보하고 있음.
- 이러한 사실은 자치입법권의 확대와 더불어 규범통제제도를 정비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줌.

○ 주민발안이나 주민투표 등의 제도는 주민참여와 관심제고를 위해 바람직하고 여러 가지 제도적 순기능을 가지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직접민주제적 요소를 남용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음.
- 포퓰리즘에 기반 한 사회기반시설의 확대는 신중해야 함.
- 위임사무의 증가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음.
- 특히 국가사무인 기관위임사무의 수행은 국가의 재정지원을 확보하지 않을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에 큰 부담을 가져올 수 있음.
- 국가위임사무는 가능한 한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에 대한 적절한 재정지원이 수반되도록 해야 함.
- 기관위임사무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함.
- 과도한 국가위임사무의 수행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과 독립을 침해할 수

있음.

VI. 일본¹⁵⁾

1. 전략적 광역연계의 강화

- 지방자치를 둘러싼 환경변화에 대응하면서 지방분권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광역적 연계에 따른 지방공공단체의 기능적 보완”¹⁶⁾이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음.
- 지방자치법에서는 별도의 법인 설립을 요하지 않는 구조로서 연계협약(제252조의2), 협의회(제252조의2의2), 기관 등의 공동설치(제252조의7), 사무의 위탁(제252조의14), 사무의 대체집행(제252조의16의2)을, 별도의 법인 설립이 필요한 구조로서 일부사무조합(제284조 제2항), 광역연합(제284조 제3항) 등과 같은 지방공공단체 간의 광역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 2014년의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도입된 연계협약은 “지방공공단체가 다른 지방공공단체와의 협의로 연계하여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방침 및 역할분담을 정하는 연계협약을 체결하고, 거기에 기초하여 각각이 분담해야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채택할 의무를 쌍무적으로 지는 구조”¹⁷⁾를 의미함.
 - 이러한 연계협약제도는 별도의 법인을 설립할 필요가 없고, 연계협약에서 사무분담이나 정책적 역할분담 및 분쟁해결의 절차 등을 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유용성이 있음.
- 보통지방공공단체의 지역적 특성이나 한계를 고려하여 규모의 경제 또는 집약화에 의한 효율적 행정운영, 지방공공단체 간의 분업에 의한 전문분야로의 중점화를 도모하는 등 전략적 접근의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음.
 - 즉, “연계협약 등의 공동처리제도를 최대한 활용하고, 사무사업의 대담한 분

15) 이상윤, 「주요 외국의 지방자치제도 연구 - 일본 -」, 한국법제연구원, 2018에서 요약.

16) 宇賀克也, 「地方自治法概説(第6版)」, 有斐閣, 2015, 98頁; 이상윤, 앞의 보고서에서 재인용.

17) 松田恵里, “地方分権改革の経緯と動向”, 「調査と情報」第930号(国立国会図書館 調査及び立法考査局行政法務課), 2016, 9頁; 이상윤, 앞의 보고서에서 재인용.

업으로 자치단체 간의 기능분담을 도모하며, 사업이나 기능별로 다른 기초 자치단체와 연계하는 중층적인 클러스터를 형성함으로써 광역연계의 장점을 최대한 누려야 한다”¹⁸⁾는 것임.

- 이와 같이 현재 일본에서는 지방분권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된 시정촌의 물리적 통합보다는 오히려 보통지방공공단체 간의 수평적·상호보완적이지 적절한 쌍무적 역할분담을 통한 기능적 협력체계의 강화가 지방분권개혁의 주요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도 2010년 10월 1일에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지방자치단체 간의 통합이 추진되고 있는데 일본이 “주민에게 통합건의권을 주고, 자율통합위원회를 구성하게 하는 등의 법률적 정비를 이룬 점”¹⁹⁾을 잘 살펴봐야 함.

-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의사에 기초한 통합의 추진을 강조하는 것으로서, 향후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정책의 방향성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의사에 기초한 전략적 광역연계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함.
- 이러한 점에서 일본의 시정촌 통합과 광역연계의 강화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큼.

2. 자치입법권의 강화

○ 일본헌법 제94조에서는 지방공공단체의 조례제정권을 규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지방자치법 제14조에서는 보통지방공공단체의 조례제정권을 구체화하였음.

- 전체적으로 보아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법상 자치입법권에 관한 규정은 일본의 지방자치법과 유사한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조례제정권의 한계, 권리제한의 무부과 관련조례, 조례위반 벌칙규정, 장의 규칙제정권, 규칙위반에 대한 벌칙규정,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관계 등의 관점에서 차이가 있음.
- 이러한 일본과 우리나라의 자치입법권에 관한 지방자치법상 규정내용의 관점별 차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²⁰⁾

18) 公益社團法人 經制同友會, 住民が自らの選択と責任で創り上げる地方自治, 2016, 7頁; 이상윤, 앞의 보고서에서 재인용.

19) 최우용, “일본의 기초지방자치단체(시·정·촌) 통합에 관한 법률 및 사례 연구”, 「공법학연구」 제11권 제4호, 2010, 445면; 이상윤, 앞의 보고서에서 재인용.

20) 이상윤, 앞의 보고서, 114쪽.

구분	일본	우리나라
조례제정권의 범위	• 보통지방공공단체는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2조제2항의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음(제14조제1항)	•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음(제22조 본문)
권리제한의무 부과 관련 조례의 제정	• 보통지방공공단체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례에 의해야 함(제14조제2항)	•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함(제22조 단서)
조례위반에 대한 벌칙규정	• 보통지방공공단체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조례에서 조례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100만円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또는 몰수의 형이나 5만円 이하의 과료를 부과하는 취지의 규정을 둘 수 있음(제14조제3항)	•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조례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음(제27조제1항)
장의 규칙제정권	• 보통지방공공단체의 장은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음(제15조제1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음(제23조)
규칙위반에 대한 벌칙규정	• 보통지방공공단체의 장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지방공공단체의 규칙에서 규칙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5만円 이하의 과료를 부과하는 취지의 규정을 둘 수 있음(제15조제2항)	• 규정 없음
광역지자체 조례와 기초지자체 조례의 관계	• 규정 없음	•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됨(제24조)

<표 10> 우리나라와 일본의 자치입법권 관련규정 비교

- 첫째, 자치입법권의 범위에 관한 규정의 경우, 일본은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제14조제1항)라고 규정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제22조 본문)라고 규정하여, 일본에 비하여 문언적 해석상 범위

가 한정되어 있음.

- 둘째, 권리제한·의무부과 관련규정, 이른바 “행정사무조례”의 제정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일본은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례에 의해야 한다”(제14조제2항)고 규정하여 “필요적 조례사항이라는 취지를 명기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임의적 조례제정을 전제”로 하고 있음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제22조 단서)고 규정하여, 행정사무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 셋째, 조례위반에 대한 벌칙규정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일본은 “조례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100만円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또는 몰수의 형이나 5만円 이하의 과료를 부과하는 취지의 규정을 둘 수 있다”(제14조제3항)고 규정하여 질서벌과 함께 형사벌을 규정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제22조 단서)고 하여 형사벌의 경우 법률의 위임이 필요하며, “조례를 위반한 자에 행위에 대하여 조례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제27조제1항)고 규정하여 형사벌의 경우는 법률의 위임이 필요한 반면,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부과할 수 있는 질서벌은 1천만원의 과태료에 한정하고 있음.
- 넷째, 장의 규칙제정권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일본은 “보통지방공공단체의 장은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제15조제1항)고 규정하고 있음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제23조)고 하여 장의 규칙제정권에 대하여도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로 제한하고 있음.
- 다섯째, 규칙위반에 대한 벌칙규정을 살펴보면, 일본은 “보통지방공공단체의 장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규칙에서 규칙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5만円 이하의 과료를 부과하는 취지의 규정을 둘 수 있다”(제15조제2항)고 규정하고 있음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여섯째, 광역지방자치단체 조례와 기초지방자치단체 조례의 관계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제24조)고 규정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 조례와 규칙의 우위성을 인정하고 있음에 대하여, 일본은 이에 관한 규정이 없음.
- 이와 같이 일본의 경우는 문언 상 대체로 보통지방공공단체의 자치입법권의 범위를 우리나라에 비하여 넓게 규정하고 있고, 자치입법의 실효성 강화를 위하여 형사벌까지 규정하는 등 벌칙규정을 강화하고 있음.
- 특히 우리나라와는 달리 일본의 경우는 도도부현 조례나 규칙의 시정촌 조례나 규칙에 대한 우위성을 명문화하고 있지 않으며, 실제적 운용은 별도로 하고, 이러한 규정의 부재는 보통지방공공단체 간의 광역적 협력체계의 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는 실제상 법해석을 통하여 유연한 운용을 하고 있지만, “일본과 한국의 각각의 공통점과 차이를 인식하면서 서로 배워가는 것이 중요”²¹⁾하다는 점에서, 일본의 이러한 입법형태는 향후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의 개선방안을 모색할 경우에 참고할 필요가 있음.

3. 지방자치의 본지의 내용적 구체화

- 일본 지방자치법 제1조의2에서는 지방공공단체가 지역에서의 종합적인 행정주체로서의 위치를 부여하고(제1항), 주민에게 친근한 행정은 가능한 한 지방공공단체에 위임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제2항).
- 지방자치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국가와 지방공공단체의 역할분담에 관한 규정, 즉 법령의 입법원칙(제11항), 법령의 해석·운용원칙(제12항), 자치사무에 대한 특별배려의무(제13항) 등과 연계하여 살펴보면, 향후 입법의 해석·운용지침으로서 지방자치 적합성이라는 요소를 도출할 수 있음.
- 이러한 “지방자치 적합성”이라는 요소는 규제가 필요한 일정한 사회현상이

21) 아키스키 겐고, “일본의 지방자치와 지방행정”, 「한일공동연구총서」,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2007, 173쪽; 이상윤, 앞의 보고서에서 재인용.

발생한 경우에 법률 또는 조례를 제정할 것인가, 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새로운 사무를 국가와 지방공공단체에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지방공공단체에 배분한 사무에 대하여 국가가 어떻게 관여할 것인가, 법률과 조례의 충돌 관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등을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이러한 지방자치의 본지의 현대적 해석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는 주민이 해당 지역의 사항을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는 구조라야 하고, 스스로 결정할 의사나 기량을 준비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²²⁾는 관점도 반영되어야 함.

4. 주민자치의 강화

- 일본헌법 제92조에 따른 지방자치의 주요내용으로서 주민자치와 단체자치를 들 수 있음.
 - 주민자치는 지방의 행정은 해당 지방의 주민의 의사와 책임 하에 처리해야 한다는 민주주의적 원칙임.
 - 이러한 주민자치의 강화와 관련해서는 “지역 내 분권”이라는 관점이 중요함.
 - 지역 내 분권이 행해져야 지역 커뮤니티의 자치가 가능하게 되고, 결국 주민 자치가 강화되며, 커뮤니티 스스로가 거버넌스를 수행할 수 있음.
- 시정촌의 자치회 등의 기능이 중시되고 있지만, 가입률의 저조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NPO 등의 지역 공동체의 활동주체가 더욱 다양화되고 있음에 대하여 결집의 장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도 있음.
- 이러한 다양한 지역 커뮤니티의 활동주체가 서로 연계하여 협력하는 구조가 필요함.
 - 일본은 광역화와 협역화, 지역 커뮤니티의 활동주체 다양화, 협력체계의 구축 필요성 등을 배경으로 하여 주민자치의 강화를 도모하고 있음.

22) 片山善博, “地方自治における 法の不足 -法曹と法テラスへの期待-”, 「総合法律支援論叢」第9号, 2017, 110頁; 이상윤, 앞의 보고서에서 재인용.

제4장 지방자치관련 법과 수원시 조례

I. 개정 지방자치법과 조례

1. 개정 지방자치법의 조례 위임 사항

1) 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라 조례로 정해야 할 규정

○ 개정지방자치법에서 법규에 따라 조례를 제정해야 하는 조항은 다음과 같음.

- 제7조(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 제9조(사무소의 소재지)
- 제20조(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 제21조(주민의 감사 청구)
- 제34조(조례 위반에 대한 과태료)
- 제40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 제41조(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 제42조(상해·사망 등의 보상)
- 제43조(겸직 등 금지)
- 제44조(의원의 의무)
- 제46조(지방의회의 의무 등)
-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 제51조(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의응답)
- 제53조(정례회)
- 제54조(임시회)
- 제56조(개회·휴회·폐회와 회의일수)
- 제64조(위원회의 설치)
- 제71조(위원회에 관한 조례)
- 제76조(의안의 발의)
- 제78조(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 제102조(사무처 등의 설치)
- 제10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
- 제105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

-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제118조(직원에 대한 임면권 등)
- 제123조(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
-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 제126조(직속기관)
- 제127조(사업소)
- 제128조(출장소)
- 제129조(합의제행정기관)
-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 제134조(하부행정기구)
- 제139조(지방채무 및 지방채권의 관리)
- 제141조(회계의 구분)
-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 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 제160조(재산의 관리와 처분)
- 제161조(공공시설)
- 제166조(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설치와 구성 등)
- 제168조(사무의 위탁)
- 제178조(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와 지방자치단체조합장의 권한)

○ 이상의 조문 가운데 제41조, 제44조, 제54조는 이번 개정으로 새로 도입된 법규임.

2) 법률에 따라 조례를 정비해야 하는 규정

○ 조례 정비를 필요로 하는 법조항

-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의 특례)
- 제18조(주민투표)
- 제19조(조례의 제정과 개정·폐지 청구)
- 제25조(주민소환)
- 제36조(지방선거에 관한 법률의 제정)
-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 제135조(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 제139조(지방채무 및 지방채권의 관리)
- 제141조(회계의 구분)
- 제152조(지방세)
- 제162조(지방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
- 제163조(지방공기업의 설치·운영)
- **제186조(중앙지방협력회의의 설치)**
- 제198조(대도시 등에 대한 특례 인정)

○ 제19조, 제186조는 이번 개정으로 새로 도입됨.

II. 지방자치관련법과 수원시 조례

1.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 2013년 5월 28일에 법률 제11829호로 제정되고 시행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은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지방분권촉진위원회의 존속기한이 2013년 5월 28일로 예정되어 있던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과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폐지하고 각각의 법에서 정하고 있던 지방분권촉진위원회와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의 업무중복에 따른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하여 제정하였음.

○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가.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방자치와 관련되는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미리 위원회에 통지하도록 하고, 위원회는 필요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다. 종전의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과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

별법」에 규정된 권한이양 및 사무구분체계의 정비,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 지방재정의 확충 및 건전성 강화 등 지방분권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함.

라. 종전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특별시 및 광역시의 구와 군의 지위·기능 등에 관한 개편, 도의 지위·기능 재정립, 시·군·구 통합 및 읍·면·동 주민자치회 설치 등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함.

마. 종전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례와 대도시에 대한 특례를 동일하게 규정함.

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지방자치발전위원회를 설치함.

사.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함.

아. 위원회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된 실천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권한이양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며, 그 권고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함.

○ 특히 제40조부터 제43조는 특별시와 광역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10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재정 운영 및 지도·감독에 대한 특례를 정하고 있는데 이는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에서의 특례시에 대한 앞으로의 특별법 제정에 대한 내용을 유추해 볼 수 있는 법이라 할 수 있음.

시행예정 지방자치법	지방분권법
제198조(대도시 등에 대한 특례 인정) ①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제40조(대도시에 대한 사무특례) ① 특별시와 광역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10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재정 운영 및 지도·감독에 대하여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예정 지방자치법	지방분권법
대도시의 행정, 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	특례를 둘 수 있다. 다만, 인구 30만 이상인 지방자치단체로서 면적이 1천제곱킬로미터 이상인 경우 이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본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특례를 발굴하고 그 이행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도시 및 시·군·구의 행정, 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다. 1.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한다) 2. 실질적인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시·군·구	제41조(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사무특례) 특별시와 광역시가 아닌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장은 관계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채권의 발행. 이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건축법」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허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51층 이상인 건축물(연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을 증축하여 층수가 51층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연면적 합계가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연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을 증축하여 연면적 합계가 20만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미리 관할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4.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 및 제12조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 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8조에 따른 사립 박물관 및 사립 미술관 설립 계획의 승인 6. 「소방기본법」 제3조 및 제6조에 따른 화재 예방·경계·진압 및 조사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등의 업무 7. 도지사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신청서의 제출

시행예정 지방자치법	지방분권법
	8. 「지방자치법」 제11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정원의 범위에서 정하는 5급 이하 직급별·기관별 정원의 책정 9. 도지사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도시·군관리 계획 변경 결정 요청. 이 경우 미리 관할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42조(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보조기관 등) ① 「지방자치법」 제1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부시장은 2명으로 한다. 이 경우 부시장 1명은 「지방자치법」 제110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일반직, 별정직 또는 임기제 지방공무원으로 보(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부시장 2명을 두는 경우에 명칭은 각각 제1부시장 및 제2부시장으로 하고, 그 사무분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법」 제59조, 제90조 및 제112조에도 불구하고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기구 및 정원은 인구, 도시 특성,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43조(대도시에 대한 재정특례) ① 도지사는 「지방재정법」 제29조에 따라 배분되는 조정교부금과 별도로 제40조제1항에 따른 대도시의 경우에는 해당 시에서 징수하는 도세(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 중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일정 비율을 추가로 확보하여 해당 시에 직접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도시에 추가로 교부하는 도세의 비율은 사무이양 규모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 「지방세법」 제142조제1항에 따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2항제2호가목에도 불구하고 시세로 한다.

<표 11> 시행예정 지방자치법과 지방분권법 비교

- 수원시의 경우 이미 지방분권법에 의해 필요한 조례는 이미 제정·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기본조례나 회의규칙의 내용은 큰 틀에서 개정할 내용은 없으나 다만 몇 가지 추가되거나 조정되어야 할 필요는 있음.
- 이를 위해 지금 시행되고 있는 특별법 가운데 가장 유사할 것으로 판단되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세종시법)’과 이에 따른 세종시 조례 등을 비교하여 개정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2. 세종시법과 수원시 조례

1) 세종시법의 제정과 개정

- 2010년 12월 27일 제정되고 시행된 세종시법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세종특별자치시를 설치하고 그 법적 지위와 관할구역 등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증진, 지역개발 및 국가 균형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 2014년 1월 7일 세종시법은 전부개정을 하였음.
 - 전부개정의 이유는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고 지역개발 및 국가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2012년 7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하였으나, 특별자치시의 설치목적에 걸맞는 관련 법규정이 아직 미비하고, 행정 수요와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투자수요 등으로 세종특별자치시의 재정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이를 충당하기 위한 재원이 부족한 실정인바, 세종특별자치시의 특수한 법적 지위에 부합하는 자치제도를 개선·보완하고 부족한 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국가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세종특별자치시의 추진기반을 성공적으로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힘.
- 총 19차례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최근 3차례의 개정은 2022년 시행 예정이며 그 중 2차례의 개정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것이고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개정 세종시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성과 책임성을 갖고 지역의 사무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국가의 재정과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할 필

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 비율 조정 등을 통한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논의한 결과 지방소비세율을 21퍼센트에서 25.3퍼센트로 인상하고, 인상된 지방소비세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사업의 비용 보전과 이로 인해 감소하는 조정교부금과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보전에 우선 배분하기로 함에 따른 개정임.

2) 세종시법과 특례시

○ 세종시법에서 앞으로 특례시에도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법규는 다음과 같음.

제14조(재정 특례) ① 시장은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광역시세 및 구세 세목을 세종특별자치시세의 세목으로 부과·징수한다.

② 「지방교부세법」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행정체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2023년까지 세종특별자치시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액과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액과 그 차액의 100분의 25 이내의 금액을 더한 규모로 산정되도록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할 수 있다.

③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후 최초 도래하는 회계연도부터 2023년까지 세종특별자치시에 교부하는 보통교부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액과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액과 그 차액의 100분의 25 이내의 금액을 더한 규모로 산정되도록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할 수 있다.

④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담배소비세의 100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하는 전출금은 세종특별자치시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목적세,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 및 같은 항 제4호가목에 따라 특별자치시에 납입되는 지방소비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천분의 36으로 한다.

제15조(조직 특례) 「지방자치법」 제125조에도 불구하고 세종특별자치시에 두는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구규모·면적·도시발전단계 등 행정수요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공직선거 특례) ① 이 법에 따른 시장 및 시의회의원 선거에 관한 사항은 이 법과 「공직선거법」에서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시·도지사선거와 시·도의회의원선거에 관한 규정을,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선거에 관한 사항은 이 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감선거에 관한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② 지역선거구시의회의원(이하 이 조에서 “지역구시의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공직선거법」 제22조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16명으로 한다.

③ 시의회의 비례대표의원 정수는 「공직선거법」 제22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지역구시의원 정수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이 경우 단수는 1로 본다.

④ 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의 공정한 획정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에 시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두며, 「공직선거법」 제24조의3에 따른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규정은 시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준용한다.

⑤ 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는 인구·면적·구역·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확정하되, 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공직선거법」 제26조 및 같은 법 별표 2에도 불구하고 시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조례로 정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를 확정하는 경우 하나의 읍·면·동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에 속하게 할 수 없다.

⑦ 제1항에 따라 「공직선거법」에 따른 시·도지사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선거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공직선거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선거권자의 추천은 300명 이상 500명 이하로 한다.
2. 삭제 <2015. 8. 13.>
3. 「공직선거법」 제61조의2제1항에 따른 정당선거사무소는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 안에 1개소를 둘 수 있다.
4. 「공직선거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선거사무소에 둘 수 있는 선거사무원

수는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 안의 읍·면·동 수의 3배수에 5를 더한 수 이내로 한다.

5. 「공직선거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지역방송시설에는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을 방송권역으로 하는 인접한 시·도 안에 있는 방송시설을 포함한다.

6. 삭제 <2015. 8. 13.>

제20조(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청구에 관한 특례) ① 18세 이상의 주민(「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8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2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시 조례로 정하는 주민 수 이상의 연서로 시의회에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1.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있는 국민
3.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체류자격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연장허가를 통하여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추고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자로서 시조례로 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 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1조(감사위원회의 설치 및 직무 등) ① 「지방자치법」 제190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지방공무원법」 제81조에도 불구하고 감사대상 기관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제반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고 제26조에 따라 그 결과를 처리하는 행위(이하 “자치감사”라 한다)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에 있어서는 독립된 지위를 가진다.

③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감사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은 시조례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 중 2명은 시의회에서, 2명은 시교육감이 각각 추천하는 사람

위촉한다. 다만, 감사위원장은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시장이 임명한다.

⑤ 세종특별자치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⑥ 자치감사의 구체적인 방법 및 범위, 자치감사 활동에서 일반적으로 준수되어야 할 기준 등 자치감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위원장이 정한다.

⑦ 그 밖에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조례로 정한다.

제29조(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에 관한 특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30조(주민참여 예산제도) ① 시장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공모방식 등에 의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참여 주민의 선정 방법 및 절차, 주민참여과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조례로 정한다.

3) 세종시법과 수원시 조례

○ 세종시법과 비교하여 수원시에서 이미 조례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세종시법	수원시 조례
제15조(조직 특례)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20조(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청구에 관한 특례)	수원시 조례 제정 및 개정·폐지 청구에 관한 조례
제29조(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에 관한 특례)	1. 수원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 2. 수원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3. 수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0조(주민참여 예산제도)	수원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표 12> 세종시법과 수원시조례 공통내용

○ 그 외 세종시법에서 수원시가 특례시로 지정되었을 경우 보완되어야 할 것

으로 예상되는 추가 내용은 다음의 내용임.

- 제14조(재정 특례)는 지방분권법 제43조에서도 정하고 있는 바, 그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 달라질 수 있으나 앞으로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의 개정을 통해 재정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이를 통해 수원시의 재정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확대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례 정비 등의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 제19조(공직선거 특례)는 선거구획정 및 의원과 비례의원 정수를 정하는 것을 수원시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조례정비가 필요함.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의 기초의원 정수는 447명이고 그 가운데 수원시는 비례의원 4명 포함 37명인데 수원시 인구는 122만명을 넘어서고 있음. 단순계산으로도 약 37,000명의 주민당 1명임. 이에 비해 세종시의 경우 인구 36만여명에 의원 정수가 비례의원 2명 포함 18명으로 약 22,000명의 주민 당 1명임. 따라서 특례시가 될 경우에는 선거구 조정 및 의회의원수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지방선거의 선거구 획정은 선거일로부터 6개월 전에 확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2022년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는 적용이 힘들 것으로 예상됨.
- * 공직선거법 제24조의3(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⑤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제26조제2항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고, 그 이유나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첨부하여 임기만료에 따른 자치구·시·군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6개월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그러나 선거구 획정 및 의원 정수에 관한 사항에 대한 원칙과 기준에 대해서는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음.

- 제21조(감사위원회의 설치 및 직무 등) 등은 앞으로 수원시가 특례시가 되었을 경우 설치해야 할 것으로 예상됨. 물론 현재의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는 별개의 조례가 필요함. 세종시의 경우에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별개로 ‘세종특별자치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으며 감사대상기관 및 내용에서 차이가 있음.

4) 회의 관련 세종시 조례와 수원시 조례의 비교

세종시의회 회의 운영조례 및 규칙	수원시의회 기본조례 및 회의규칙	비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수원시의회 기본조례	
제2조(연간 회의 총일수)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의 회기를 합하여 14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이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제7조(회의총일수)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의회의 회의 총 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10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연간 회의 총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3조(회기) ① 정례회의 회기는 제1차 정례회와 제2차 정례회를 합하여 70일 이내로 한다. ② 임시회의 회기는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회기마다 본회의의 의결로 정한다.	제8조(회기) 법 제44조 및 제45조, 제47조에 따라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의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1.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46일 이내로 한다. 2. 임시회의 회기는 20일 이내로 한다.	* 임시회 소집에 관한 규정이 없어 추가할 필요가 있음
제4조(정례회의 집회일) ① 제1차 정례회는 매년 5월 20일에 집회한다. 다만, 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9월 15일에 집회하며, 이 경우 새로 구성되는 의회가 필요하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와 본회의 의결로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정례회 집회)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정례회의 집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세종시의회 회의 운영조례 및 규칙	수원시의회 기본조례 및 회의규칙	비고
②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11일에 집회한다. 다만, 대통령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7일 이내에서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집회일이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관공서의 정상근무일에 집회한다.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12월에 집회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정례회의 운영) ① 제1차 정례회에서 처리해야 하는 활동 및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 2. 법 제39조제1항제3호 및 제134조에 따른 전년도 결산의 승인 3. 그 밖에 의회 부의안건의 심의·의결 등 의정활동 ② 제2차 정례회에서 처리해야 하는 활동 및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장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으로부터 행정사무의 처리상황 보고 2. 법 제4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질문·응답 3. 법 제39조제1항제2호 및 제127조에 따른 다음연도	제11조(정례회 심의)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34조에 따라 결산안의 승인 및 그 밖에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1조 및 제127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의 실시 및 예산안의 의결, 그 밖에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세종시의회 회의 운영조례 및 규칙	수원시의회 기본조례 및 회의규칙	비고
예산의 심의·확정 4. 예산안 제안에 따른 다음연도 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시정연설 5. 그 밖에 의회 부의안건의 심의·의결 등 의정활동		
제6조(의회운영 기본일정) 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은 각 교섭단체의 대표의원 및 의회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정하고 전체 의원과 세종특별자치시장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정한다. 이 경우 상반기는 전년도 12월 31일까지, 하반기는 7월 31일까지 정할 수 있다.	제16조의2(연간 의회운영의 기본일정 수립) ①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정하고, 전체 의원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있는 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1월부터 6월까지를 기간으로 하여 작성하고, 그 다음 일정은 새로 구성되는 의회의 의장이 7월 31일까지 정한다.	
제7조(회의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43조 및 제71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 민주적·효율적 운영을 위하		

세종시의회 회의 운영조례 및 규칙	수원시의회 기본조례 및 회의규칙	비고
여 회의운영과 내부규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록)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임기 초에 당선증서를 의회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 제시하고 등록해야 한다.	제23조(등록) 의회 의원은 임기 초에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에게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제3조(의석배정) ① 의원의 의석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 ② 의원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의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이 지역구 및 비례대표의원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제24조(의석배정) ①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정한다. ②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국장이 지역선거구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제4조(최초집회) 의원 총선거 후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이하 "의회"라고 한다)의 최초집회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의원임기 개시일에 소집하도록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1항에 따라 사무처장이 미리 공고할 수 있다.		
제5조(개회식)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의원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후에 개회식을 행한다.	제12조(개회식)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후에 개회식을 행한다.	

세종시의회 회의 운영조례 및 규칙	수원시의회 기본조례 및 회의규칙	비고
제6조(선서) 의원은 임기 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25조(선서) 의원은 임기 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행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7조(의회의 개폐선포) 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이 경우 폐회는 임시회 및 정례회의 마지막 본회의의 산회로 갈음한다.	제13조(의회의 개폐선포) 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제8조(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정부에서 통지된 영장사본을 청가서로 본다. ② 의원의 청가는 5일 이내의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의회에서 허가한다. 다만, 폐회 중에 제출된 청가는 의장이 허가한다. ③ 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해야 하고, 청가의 기간 내에 의회에 출석한 때에는 그날 이후의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29조(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원의 청가는 5일 이내의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의회에서 허가한다. ③ 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의 기간 내에 의회에 출석하였을 때에는 그날 이후의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④ 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 신	

세종시의회 회의 운영조례 및 규칙	수원시의회 기본조례 및 회의규칙	비고
④ 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2일 이상 계속하여 결석한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해당위원의 출석을 요구해야 한다. ⑥ 제5항의 출석요구는 서면으로 하되 긴급을 요할 때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위원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출석요구는 문서로 하되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제2장 의장과 부의장		
제9조(의장·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고 2차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제2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최	14조(의장·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에 따른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고 2차투표에도 제1항에 따른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일 경우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 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세종시의회 회의 운영조례 및 규칙	수원시의회 기본조례 및 회의규칙	비고
다선 의원을,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각각 선거한다. ⑤ 의장 또는 부의장으로 당선되기를 희망하는 의원은 해당선거 실시 전에 5분 이내에서 정견발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언의 순서는 선거일 오전 9시부터 사무처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한 순서에 따르며, 본인의 소견 외에 다른 의원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발언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⑥ <삭제> ⑦ 제1항의 선거에서는 의원이 기표("..." 표가 각인된 기구를 사용하여 찍는 것을 말한다)하는 투표용지를 사용해야 한다. 이 경우 무효투표의 판단은 「공직선거법」제179조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른 결선투표결과의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각 항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선거한다. ⑤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해당 선거일 1일 전 18:00까지 교섭단체 대표의 추천서 또는 5명 이상의 의원 서명부를 첨부한 등록신청서를 의회사무국에 서면으로 등록해야 하며, 등록을 한 의원에 한정하여 해당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가진다. ⑥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선거당일 본회의장에서 5분 이내에 정견을 발표할 수 있으며, 발표순서는 후보자 등록 접수순으로 하고 본인의 소견 이외에 다른 의원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	
제10조(의장·부의장의 임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선출된 날부터 그 직무를 시작하며, 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의원임기 개시일부	제15조(의장·부의장 임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선출된 날부터 그 직무를 시작하며,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의원의 임기개시일 부터 2	

세종시의회 회의 운영조례 및 규칙	수원시의회 기본조례 및 회의규칙	비고
터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된 때에는 그 의장 또는 부의장은 다음 회기에서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한 날의 전일까지 재임한다.	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된 때에는 그 의장과 부의장은 다음 회기에서 새로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하는 날의 전일까지 재임한다.	
제11조(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① 의장의 사고(사망, 사직, 불신임, 퇴직 등으로 결위된 때와 법률상의 사고, 여행, 질병, 휴가, 경조사 및 법 제70조에 따른 제척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다만, 의장이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선출된 부의장이 직무를 대리한다. ② 의장직무를 대리하는 부의장의 직무권한은 의회 본회의 운영에 관한 것에 한하며, 그 직무대리 기간은 의장의 사고발생 또는 의장이 지정하는 시각부터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될 때까지로 한다.		* 지방자치법 제51조 (부의장의 의장 직무 대리) 지방의회의 부의장은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12조(의장·부의장 보궐선거에서 다른 직의 사임) ① 의장 또는 부의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의원이 다른 직(부의장 및 위원장을 포함한다)을 가진 경우에는		

세종시의회 회의 운영조례 및 규칙	수원시의회 기본조례 및 회의규칙	비고
선거일 2일 전까지 그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임은 제1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13조(임시의장의 선거)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선거의 예에 따르되, 의원 중에서 서로 뽑을 수 있다.	제16조(임시의장의 선거)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부의장의 선거에 준한다.	
제14조(의장·부의장의 사임)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17조(의장·부의장의 사임)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②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3장 회의		
제1절 회의의 개폐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15조(회기) ① 의회의 회기는 본회의 의결로 이를 정하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② 의회의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이를 정하여야 한다. ③ 회기는 집회한 날부터 기산한다. ④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제12조(회기) ① 의회의 회기는 의결로 정하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② 의회의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정하여야 한다. ③ 회기는 집회한 날로부터 시작한다. ④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제16조(개회) 본회의는 그 의결이나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그 개회시를 정한다. 이를 변경할	제13조(개회) 본회의는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이 그 개회시를 정한다. 이를 변경할 때 또한 같다.	

세종시의회 회의 운영조례 및 규칙	수원시의회 기본조례 및 회의규칙	비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7조(회의에 관한 선포) ① 본회의의 개의, 정회, 산회 및 유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② 의장은 제16조에 따른 개의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법 제63조제1항의 의사정족수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③ 의장이 개의를 선포하기 전이나 정회, 산회 또는 유회를 선포한 후에는 의사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제14조(회의에 관한 선포) ① 개의·정회·산회 및 유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② 의장은 제13조에 따라 개의 시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의 정족수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③ 의장이 개의를 선포하기 전이나 정회·산회 및 유회를 선포한 후에는 의사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제18조(휴회) ① 의회는 그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 ② 휴회중이라도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재개한다.	제15조(휴회) ① 의회는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 ② 휴회 중이라도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재개한다.	
제18조의2(산회) ①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의 의사가 끝났거나, 더 이상 회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은 산회를 선포한다. ② 산회를 선포한 당일에는 회의를 다시 개의 할 수 없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		

세종시의회 회의 운영조례 및 규칙	수원시의회 기본조례 및 회의규칙	비고
는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산회를 정회로 치유하고 속개할 수 있다.		
제2절 의사일정		
제19조(의사일정의 작성) ① 의장은 개의일시, 부의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미리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제18조제2항에 따라 회의를 재개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의장은 의사일정을 작성할 때에는 미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③ 의장은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	제16조(의사일정의 작성) ① 의장은 개의일시·부의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미리 의원에게 배부한다. 그러나 재개할 때는 예외로 한다. ② 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의사일정을 지체 없이 의원에게 통지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표한다. ④ 의장은 특히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	
제20조(의사일정의 변경) ① 의장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 또는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하거나 상정된 안건을 삭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원의 동의 이유서를 첨부해야 하	제17조(의사일정의 변경)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하여는	

세종시의회 회의 운영조례 및 규칙	수원시의회 기본조례 및 회의규칙	비고
며 그 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21조(의사일정의 미료안건) 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였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	제18조(의사일정의 미료안건) 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	
제3절 의안 및 동의		
제22조(의안의 발의·제출)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거나 시장·교육감 또는 위원회가 제출 또는 제안한다. ② 시장·교육감·위원회 또는 의원은 예산상의 조치가 필요한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안을 발의 또는 제출할 때에는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의안의 제출은 별지 제1호서식을 따른다.	제19조(의안의 제출·발의)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시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② 제1항의 의안은 별지 제4호부터 제7호 서식에 따라 그 안을 갖추어 늦어도 회기 시작 1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시행에 긴급이 필요한 의안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위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수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서는 시장 또는 주민이 발의한 의안에 대해서만 비용추계서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어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한 의안에 따른 비용추계서 추가할 필요가 있음
제23조(조례안예고) ① 의장은 조례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법 제66조의2 제1항에 따라 5일 이상의	제19조의2(조례안예고) ① 의장은 조례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8	

세종시의회 회의 운영조례 및 규칙	수원시의회 기본조례 및 회의규칙	비고
기간을 정하여 그 취지, 주요 내용 및 전문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공보나 의회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예고를 할 때에는 해당 조례안에 대하여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 등(이하 “의견제출자”라 한다)으로 하여금 의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의견제출자의 의견을 접수하여 소관 위원회에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위원회는 의견제출자의 의견을 해당 조례안의 심사예에 참고하여 그 결과 반영된 사항과 그러하지 아니한 사항을 위원장의 심사보고에 포함시켜야 한다. ⑤ 의장은 해당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때에는 의견제출자에게 그 의견의 반영여부를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호 서식에 따라 그 취지, 주요내용 및 전문(신·구 대비표를 포함한다) 등을 시보 또는 의회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예고할 수 있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조례안은 그 협의를 한 후에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예고를 할 때에는 해당 조례안에 대하여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 등(이하 “의견제출자”라 한다)으로 하여금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의견을 접수한 때에는 즉시 소관 위원회에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④ 소관 위원회는 의견이 접수된 조례안을 심사 후, 의견의 반영 여부 사항을 심사결과보고서에 포함시켜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의견이 제출된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때에는 의견제출자에게 의견의 반영여부를 5일 이내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24조(상임위원회 회부) ①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지체없이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제20조(상임위원회 회부) ①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경우에는 의원에게 이를 인쇄하여 배부하거나 전자문서로 전송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고, 소관	

세종시의회 회의 운영조례 및 규칙	수원시의회 기본조례 및 회의규칙	비고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의안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의안을 의원에게 배부한 때에는 이를 의회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의안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하고 직접 본회의에 부의한다. 1. 의장·임시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 선거 2. 의장·부의장 불신임의 건 3.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 사임의 건 4. 회기 중에 제출한 의원 사직의 건 5.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7. 시장·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8. 재의의 건 9. 회기 결정의 건 10. 휴회의 건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	

세종시의회 회의 운영조례 및 규칙	수원시의회 기본조례 및 회의규칙	비고
제25조(특별위원회 회부) ① 의원의 동의를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이를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의장은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을 해당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20조의2(특별위원회 회부) ① 의원이 동의를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해서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의장은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을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26조(심사기간) ①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회부한 안건에 대하여도 필요할 경우 심사기간을 정하여 다시 서면으로 알릴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제20조의3(심사기간) ①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제27조(위원회의 제안 의안) 위원회에서 제안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장은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20조의4(위원회의 제출의안)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장은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28조(동회의 의제성립) 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회의 동의를 동의자 외 1명 이상 의원의 찬성	제21조(동회의 의제성립) 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의는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	

세종시의회 회의 운영조례 및 규칙	수원시의회 기본조례 및 회의규칙	비고
으로 의제가 된다.	으로 의제가 된다.	
제29조(수정동의) ①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해당 의안 상정 전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은 찬성 없이 의제가 된다. ③ 위원회는 소관사항 외의 안건에 대하여는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 ④ 의안에 대한 대안은 위원회에서 그 원안을 심사하는 동안에 제출해야 하며 의장은 이를 해당 위원회에 회부한다.	제22조(수정동의) ①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24시간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은 찬성 없이 의제가 된다. ③ 위원회는 소관사항 외의 안건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 ④ 의안에 대한 대안은 위원회에서 그 원안을 심사하는 동안에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그 위원회에 회부한다.	
제30조(의안·동의의 수정, 철회) ① 의원이 발의한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발의자 전원, 동의를(動議)를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할 때는 동의의원이 청구해야 한다. 다만,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의,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위원회의 동의(同意)를 얻어야 한다. ② 시장 또는 교육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시장 또는 교육감 제출 의안을 수정 또는	제23조(의안·동의의 철회) ① 의원이 발의한 의안을 철회하고자 할 때는 발의자 전원,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는 동의한 의원이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의,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시장 제출의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할때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세종시의회 회의 운영조례 및 규칙	수원시의회 기본조례 및 회의규칙	비고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31조(변안) ① 본회의에서의 변안동의를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그 의안을 발의할 때의 발의의원 및 찬성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시장·교육감 및 위원회가 제출한 의안은 소관 위원회의 의결로, 각각 그안을 갖춘 서면으로 제출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의안이 시장 또는 교육감에게 이송된 후에는 변안할 수 없다. ② 위원회에서의 변안동의를 위원의 동의로 그안을 갖춘 서면으로 제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본회의에 의제가 된 후에는 변안할 수 없다.	제24조(변안) ① 본회의 및 위원회는 의안을 가결한 후 법령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발견되거나 발생한 때에는 그 결과를 바꾸어 의결할 수 있다. ② 본회의에 있어서의 변안동의를 의안을 발의한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시장 또는 위원회가 제출한 의안은 소관 위원회의 의결로 각각 그안을 갖추어 서면으로 제출하되 의안이 시장에게 이송된 후에는 변안할 수 없다. ③ 위원회에 있어서의 변안동의를 그 의안의 발의의원을 포함한 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서면제출하여 발의한다.	
제32조(안건심의) ① 본회의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그 안건을 심사한 위원장 또는 의원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안건에 대하여는 제안자가 그 취지를 설명해야 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그 의결로 질의와 토론 또는 그 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제25조(안건심의) ① 본회의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제안자의 취지 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해서 위원장의 심사 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하되 의결로 질의와 토론 또는 그 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 안건이 주민청구조례안인 경우 심의는 청구인 대표자의 취지 설명, 심사 보고,	

세종시의회 회의 운영조례 및 규칙	수원시의회 기본조례 및 회의규칙	비고
② 제1항의 제안자가 시장 또는 교육감일 경우 취지 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2건 이상의 안건을 일괄하여 의제로 할 수 있다.	질의·토론 및 의결 순으로 한다. 다만, 청구인 대표자의 취지 설명은 생략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시장이 제안한 안건 또는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 보충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④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2건 이상의 안건을 일괄해서 의제로 할 수 있다.	
제33조(재회부) 본회의는 위원장 또는 의원의 심사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다시 해당 안건을 같은 위원회에 재회부하거나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25조의2(재회부) 본회의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 다시 그 안건을 같은 위원회에 재회부하거나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34조(의안의 정리) 본회의는 의안의 의결이 있은 후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정리를 필요로 할 때에는 이를 의장 또는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26조(의안의 정리) 본회의는 의안의 의결이 있은 후 서로 저촉되는 조항·문구·숫자 그 밖에 정리를 필요로 할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35조(의안의 이송) 의회에서 의결된 의안은 의장이 이를 시장 또는 교육감에게 이송한다.	제27조(의안의 이송) 의회에서 의결된 의안은 의장이 시장에게 이송한다.	
제4절 발언		
제36조(발언의 허가) ① 의원이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해당 의안 상정 전일까지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제28조(발언의 허가) ① 의원이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세종시의회 회의 운영조례 및 규칙	수원시의회 기본조례 및 회의규칙	비고
받아야 한다. ② 발언통지를 하지 아니한 의원은 통지를 한 의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③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은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해야 하며, 의장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 외의 것은 의장이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	② 발언통지를 하지 아니한 의원은 통지를 한 의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③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은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의장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 외의 것은 의장이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	
제37조(발언의 장소) ① 발언은 등단하여 하되, 극히 간단한 사항이나 토론 또는 의장이 허가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필요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하는 의원을 등단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확산 및 천재지변 등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원은 원격으로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9조(발언의 장소) ① 발언은 등단하여 하되 극히 간단한 사항이나 토론 또는 의장이 허가하였을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할 수 있다. ② 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의석에서 발언하는 의원을 등단하도록 할 수 있다.	
제38조(발언의 계속)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으로 정지되지 아니하며 산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의사가 개시되면 의장은 먼저 해당 발언을 계속하게 한다.	제30조(발언의 계속)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하며 산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의사가 개시되면 의장은 먼저 그 발언을 계속하게 한다.	

세종시의회 회의 운영조례 및 규칙	수원시의회 기본조례 및 회의규칙	비고
제39조(의제 외 발언의 금지) ① 모든 발언은 의제 외에 미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해서는 아니된다. ② 의장은 의원의 발언이 제1항에 위반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원에 대하여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시킬 수 있다.	제31조(의제 외 발언의 금지) ① 모든 발언은 의제와 관련이 없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어긋나서는 안된다. ② 의장은 의원의 발언이 제1항에 위반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원에 대하여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시킬 수 있다.	
제40조(발언회수의 제한)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두차례만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위원장, 발의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와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발언회수의 제한)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정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위원장·발의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와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1조(발언시간의 제한) ①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의·토론·보충발언·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이를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제33조(발언원칙) ①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의·보충발언·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교섭단체 대표 의원이 교섭단체를 대표하여 연설을 할 때에는 20분까지 연설을 할 수 있다. ③ 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이를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제42조(5분자유발언) ①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5명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의원에게 의회	제31조의2(5분 자유발언) ①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안건처리 직후 20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세종시의회 회의 운영조례 및 규칙	수원시의회 기본조례 및 회의규칙	비고
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그 밖의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 이내의 발언(이하 “5분자유발언”이라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②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시일 전일까지 그 발언취지를 간략히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발언순서는 신청순서에 따름을 원칙으로 한다. ③ 5분자유발언은 제1항에서 정한 제반 사안에 대하여 발언의원의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 한정해야 하며, 별도의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을 해서는 아니 된다.	에서 의원에게 청원과 그 밖의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 이내의 발언(이하 "5분 자유발언" 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②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본회의 개의일 전날까지 별지 제13호서식에 그 발언의 취지를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5분 자유발언의 발언자 수와 발언순서는 의장이 정한다. ④ 시장은 의원의 답변요구가 있는 자유발언에 대하여 발언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해당 의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한 내에 보고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이유와 보고할 수 있는 기한을 서면으로 해당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3조(보충보고) 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소수의견자가 위원회의 보고를 보충하기 위하여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다른 발언보다 먼저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34조(보충보고) 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소수의견자가 위원회의 보고를 보충하기 위하여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44조(토론의 통지) ①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제35조(토론의 통지) ①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세종시의회 회의 운영조례 및 규칙	수원시의회 기본조례 및 회의규칙	비고
여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은 해당의안 상정 전일까지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순서를 고려하여 가급적 반대토론자와 찬성토론자를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토론자로 하여금 먼저 발언하도록 한다.	여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순서를 고려하여 가급적 반대자와 찬성자를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한다.	
제45조(의장의 토론참가) ① 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으로 돌아갈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의장이 의장석에서 물러날 때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36조(의장의 토론참가) ① 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 ② 제1항에 의해 의장이 의장석에서 물러날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을 대리한다.	
제46조(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① 질의 또는 토론이 끝난 때에는 의장은 그 종결을 선포한다. ② 의원 2명 이상이 발언한 후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의장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질의나 토론에 참가한 의원은 그 종결을 동의할 수 없다. ③ 제2항의 동의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37조(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① 질의 또는 토론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종결을 선포한다. ② 의원 2인 이상의 발언이 있는 후에는 의회의 의결로 의장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질의나 토론에 참가한 의원은 그 종결을 동의할 수 없다. ③ 제2항의 동의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5절 표결		
제47조(표결의 선포) ① 표결할 때에는 의장은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선포해야 한다.	제38조(표결의 선포) ①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	

세종시의회 회의 운영조례 및 규칙	수원시의회 기본조례 및 회의규칙	비고
②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	② 의장이 표결을 선포하였을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	
제48조(표결의 참가) 표결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다만, 투표로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제39조(표결의 참가) 표결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않은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그러나 투표에 의하여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투표종결 선포 전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전자투표의 경우에는 의장의 표결 선포 전까지 재석하여 출석버튼을 눌러서 출석 확인된 의원만이 표결할 수 있다.	
제48조의2(원격 출석 및 표결) 제48조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확산 및 천재지변 등 의장(위원회의 경우 위원장을 말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원(위원회의 경우 위원을 말한다)은 원격으로 출석하여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의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하여 표결한 것으로 본다.		
제49조(의사변경의 금지) 의원은 표결에 있어서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	제40조(의사변경의 금지) 의원은 표결에 있어서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	
제50조(표결방법) ① 표결할 경우 의장은 의원에게 이의유무를 물어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이의를 제기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기명전자투표로 가부를 결정하	제41조(표결방법) ①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이의 유무를 물어 가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이의를 제기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	

세종시의회 회의 운영조례 및 규칙	수원시의회 기본조례 및 회의규칙	비고
며, 투표기기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기립 또는 거수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②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무기명전자투표 또는 투표용지에 의한 기명·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③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방법으로 표결해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1. 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 2. 시장 또는 교육감의 재의 요구 3. 인사에 관한 안건	를 결정하며, 투표기기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기립 또는 거수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② 의장이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비밀전자투표의 방법에 의하거나 기명투표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③ 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을 때에는 무기명투표로 한다.	
제51조(투표절차) ① 전자투표의 투표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투표의 기기작동은 의장의 회의 진행순서에 따라 의회사무처 직원이 운용한다. 2. 투표시작은 의장의 투표선포로 시작되며, 투표시작이 선포되면 먼저 재석버튼을 누른 후 찬성,	제42조(투표절차) ① 투표할 때에는 각 의원은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넣은 다음에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투입한다. ② 투표할 때에는 의장은 의원 중에서 몇 명의 감표위원을 지명하고 그 위원의 참여하에 투·개표 상황을 점검·계산하게 한다.	

세종시의회 회의 운영조례 및 규칙	수원시의회 기본조례 및 회의규칙	비고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를 누른다. 3. 투표종료는 의장의 선포로 종료되며, 투표종료 전 찬성, 반대, 기권 버튼을 누른 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찬성, 반대, 기권 버튼을 다시 누르고 마지막으로 누른 것을 최종 투표결과로 처리한다. 4. 투표종료 선포까지 찬성, 반대, 기권 어느 것도 누르지 않으면 기권으로 처리한다. 이 경우 의장은 투표 독려를 할 수 있다 ② 투표용지에 의한 투표의 투표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투표할 때에는 각 의원은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넣은 다음에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투입한다. 이 경우 출석의원 수의 계산은 명패함에 들어 있는 명패의 수로 한다. 2. 의장은 투표할 경우 의원 중에서 2명의 감표위원을 지명하되, 그 위원의 참여 하에 투·개표 상황을 점검·계산하게 한다. 3. 개표결과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④ 감표위원은 다른 위원 모두의 투표가 끝난 후에 투표한다. ⑤ 전자투표는 의장의 투표시작이 선포되고 투표장치 기기에 투표시간이 표시되면 출석버튼을 누른 후 찬성, 반대, 기권버튼을 누른다. ⑥ 전자투표 시간 내 찬성, 반대, 기권 중 마지막에 누른 것이 투표결과로 처리되며, 버튼을 누르지 않은 경우에는 기권으로 처리된다. ⑦ 전자투표 시간은 20초 동안 실시한다.	

세종시의회 회의 운영조례 및 규칙	수원시의회 기본조례 및 회의규칙	비고
4. 감표위원은 다른 의원 모두의 투표가 끝난 후에 투표한다.		
제52조(투표지 보관 및 공개) ① 의장은 투표지를 해당 선거의 당선자 임기동안 보관한다. ② 투표지의 공개는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하되, 의원에 대해서만 공개할 수 있다.	제44조의2(투표지 보관 및 공개) ① 의장은 본회의 투표절차 중 표결에 사용한 투표지를 2년간 보관한다. ② 의장은 본회의 투표절차 중 선거에 사용된 투표지를 해당 선거의 당선자 임기동안 보관한다. ③ 의장은 별표 1의 전자투표 개표결과 집계표를 확인하여 서명날인하고 2년간 보관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보관 중인 투표지는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공개 여부를 결정하되, 의원에 대해서만 공개할 수 있다.	
제53조(수정안의 표결순서) ① 의장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여러 개의 수정안이 제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표결의 순서를 정한다. 1.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 2. 의원의 수정안은 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한다. 3. 의원의 수정안이 열 개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한다. ②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제43조(수정안의 표결순서) ① 동일 의제에 대하여 수 개의 수정안이 제출된 경우에는 의장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표결의 순서를 정한다. 1.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 2. 의원의 수정안이 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한다. 3. 의원의 수정안이 여러 개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한다. ②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경우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세종시의회 회의 운영조례 및 규칙	수원시의회 기본조례 및 회의규칙	비고
	이 경우 원안이란 의원, 위원회, 시장 등으로부터 제출된 본래의 의안을 말한다.	
제54조(표결결과 선포)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한다.	제44조(표결결과 선포)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	
제6절 회의록		
제55조(회의록의 작성) ① 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개회·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 회의중지, 산회의 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의원의 성명 및 수 5. 출석공무원의 직과 성명 6. 의원의 이동과 의석의 배정, 변동 7. 모든 보고사항<개정, 2016. 4.11.> 8. 의안의 발의, 제출, 회부, 환부, 이송과 철회 9. 부의안건과 그 내용 10. 의사 11. 표결 및 기명투표의 투표자 성명 12. 서면질문과 답변서 13. 의원의 발언보충서	제45조(회의록의 작성) ① 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개회·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회의중지·산회의 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의원의 성명 및 수 5. 출석공무원의 직과 성명 6. 의원의 이동과 의석의 배정·변동 7. 모든 보고사항 8. 의안의 발의·제출·회부·환부·이송과 철회에 관한 사항 9. 부의안건과 그 내용 10. 의사 11. 표결 및 기명투표의 투표자 성명 12. 서면질문과 답변서	

세종시의회 회의 운영조례 및 규칙	수원시의회 기본조례 및 회의규칙	비고
14. 그 밖에 본회의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발언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한다.	13. 의원의 발언보충서 14. 그 밖에 본회의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을 발언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한다. ③ 본회의의 의사는 속기방법으로 기록한다. ④ 속기방법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의 내용은 삭제할 수 없으며, 발언을 통하여 자구정정 또는 취소의 발언을 한 경우에는 그 발언을 회의록에 기재한다.	
제56조(회의록의 서명과 보존) ① 회의록에는 의장, 의장을 대리한 부의장, 임시의장과 의회에서 선출된 2명 이상의 의원 및 사무처장이 서명한다. 다만, 선출된 의원은 한 회기 동안만 서명한다. ② 회의록은 의회에 보존하고 보존연한은 영구로 한다.	제46조(회의록의 서명과 보존) ① 회의록에는 의장, 의장을 대리한 부의장, 임시의장과 의회에서 선출된 2명 이상의 의원 및 사무국장이 서명날인한다. 다만, 선출된 의원은 한 회기 동안만 서명날인 한다. ② 회의록은 의회에 보존하고 보존연한은 영구로 한다.	
제57조(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① 발언한 의원과 공무원, 그 밖의 발언자는 임시회의록이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그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는 없다.	제47조(자구의 바로잡음과 이의의 결정) ① 발언한 의원과 공무원 그 밖의 발언자는 임시회의록이 전자회의록에 등록된 후 20일 이내에 그 자구의 바로잡음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는 없다.	

세종시의회 회의 운영조례 및 규칙	수원시의회 기본조례 및 회의규칙	비고
② 의원이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제58조(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①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에게 공개한다. 다만, 의장이 비밀을 요하거나 사회의 안녕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는 발언자 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의원이 제1항에 따라 게재하지 아니한 회의록 부분에 관하여 열람·복사, 전재·복제 등을 신청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장은 이를 거절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의원은 다른 사람에게 이를 열람·복사하게 하거나 전재·복제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④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⑤ 공표할 수 있는 회의록은 일반에게 유상으로 배포	② 의원이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과 회의록의 바로잡음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제48조(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① 회의록은 공개회의록에 등록하고 일반에게 공개한다. 그러나 의장이 비밀을 요하거나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는 발언자와 협의하여 이를 공개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의원이 제1항에 따라 게재하지 아니한 회의록 부분에 관하여 열람·복사 등을 신청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거절해서는 아니된다. ③ 제2항에 의하여 허가받은 의원은 타인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복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개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⑤ 공표할 수 있는 회의록은 일반에게 유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	

세종시의회 회의 운영조례 및 규칙	수원시의회 기본조례 및 회의규칙	비고
할 수 있다.		
제4장 위원회		
제59조(의사일정과 개회일시)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49조(의사일정과 개회일시)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고, 위원장은 위원회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소속위원에게 통지한다.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제60조(본회의 중 위원회 개회)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경우 외에는 본회의 중에는 개회할 수 없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0조(본회의 중 위원회 개회)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의 중에는 개회할 수 없다.	
제61조(위원회에서의 동의) 위원회에서의 동의는 특별히 다수의 찬성자를 요하지 아니하며 동의자 외 1명 이상 위원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51조(위원회에서의 동의) 위원회에서의 동의는 특별히 다수의 찬성자를 요하지 아니하며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62조(위원회의 제안) ①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례안 및 그 밖의 의안을 제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의안은 위원장이 제안자가 된다.	제51조의 2(위원회의 제안) ①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례안, 그 밖에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의안은 위원장이 제출자가 된다.	
제63조(의안의 상정시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의안에 대하여는 회기 개시일 전 10일까지 접수된 의안에		*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 제2항

세종시의회 회의 운영조례 및 규칙	수원시의회 기본조례 및 회의규칙	비고
한하여 의사일정으로 이를 상정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정·개정 및 폐지 조례안 2. 법령 등에 따라 제출되는 의안 3. 법령 등에 따라 보고하는 보고서		15일전
제64조(위원회의 심사) ① 위원회의 안건심사는 먼저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전문위원을 두는 경우에 한한다)를 듣고 질의·토론·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 또는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제안자가 시장 또는 교육감일 경우나 제2항의 경우 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그 의결로 청구인의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취지(청구인의 대표자와의	제52조(위원회의 심사) ①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먼저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전문 위원(전문위원을 두는 경우)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제안자가 시장일 경우나 제2항의 경우 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신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 ‘수원시 조례 제정 및 개정·폐지 청구에 관한 조례’는 청구할 수 있는 연서 주민수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으로 정하고 있으나 관련하여 발언할 기회에 대한 내용은 없으므로 세종시와 같이 이를 추가할 필요가 있음

세종시의회 회의 운영조례 및 규칙	수원시의회 기본조례 및 회의규칙	비고
질의·답변을 포함한다)를 들을 수 있다.		
제65조(위원의 발언)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동일의제에 대하여 회수 및 시간 등에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다. 다만, 따로 발언의 방법을 의결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은 위원회에서 질의를 1문1답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제53조(위원의 발언)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동일의제에 대하여 회수 및 시간 등에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다. 다만, 따로 발언의 방법을 의결하였을 때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은 위원회에서 질문을 1문1답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제66조(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 청취) 위원회는 안전에 관하여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	제54조(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 청취) 위원회는 안전에 관하여 위원아닌 의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	
제67조(위원회의 의사·의결정족수)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55조(위원회의 의사·의결정족수)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68조(연석회의) ①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다만, 표결은 할 수 없다. ② 연석회의를 열고자 하는 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의할 안전명과 이유를 서면으로 제시하여 다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요구해야 한다.	제55조의 2(연석회의) ①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그러나 표결은 할 수 없다. ② 연석회의를 열고자 하는 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의할 안전명과 이유를 서면으로 제시하여 다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세종시의회 회의 운영조례 및 규칙	수원시의회 기본조례 및 회의규칙	비고
③ 연석회의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제69조(공청회) ①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 경험이 있는 사람 등(이하 "진술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 때에는 안건, 일시, 장소, 진술인, 경비, 그 밖의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시간은 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의 발언은 그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그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③ 연석회의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제56조(공청회) ①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이 필요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열고 이해 관계자 또는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등(이하 "진술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 때에는 안건·일시·장소·진술인·경비 그 밖에 참고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시간은 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의 발언은 그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된다. ④ 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그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제70조(심사보고서의 제출)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경과와 결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소수의견의 요지를 기재해야 한다. ③ 의장은 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	제57조(심사보고서의 제출)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친 경우에는 심사 경과 및 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소수의견의 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세종시의회 회의 운영조례 및 규칙	수원시의회 기본조례 및 회의규칙	비고
가 되기 전에 인쇄하거나 전산망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도 있다.	③ 의장은 보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인쇄물 또는 전자문서로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도 있다.	
제71조(위원장의 보고) ① 위원장은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만, 위원장이 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보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소속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보고 또는 보충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제1항의 보고를 하는 때에는 자기의 의견을 덧붙일 수 없다.	제58조(위원장의 보고) ① 위원장은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위원장은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보고 또는 보충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제1항의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의견을 가할 수 없다.	
제72조(위원회 회의록) ① 위원회는 위원회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개의, 회의중지와 산회의 일시 2. 의사일정 3. 출석위원의 성명 4. 출석한 위원 아닌 의원의 성명 5. 출석한 공무원, 진술인의 성명 6. 심사안건명	제59조(위원회 회의록) ① 위원회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개회·회의중지와 산회의 일시 2. 의사일정 3. 출석위원의 성명 4. 출석한 위원 아닌 의원의 성명 5. 출석한 공무원·진술인의 성명 6. 심사안건명	

세종시의회 회의 운영조례 및 규칙	수원시의회 기본조례 및 회의규칙	비고
7. 의사 8. 표결수 9. 위원장의 보고 10. 위원회에서 종결되거나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안건명과 그 내용 11.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에서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요약하여 기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약한 기록이 발언자의 발언취지를 벗어나거나 지나치게 요약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회회의록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부위원장이 서명한다.	7. 의사 8. 표결수 9. 위원장의 보고 10. 위원회에서 종결되거나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안건명과 그 내용 11.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에서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요약하여 기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약한 기록이 발언자의 발언 취지를 벗어나거나 지나치게 요약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회 회의록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간사가 서명날인한다. ④ 소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할 때에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73조(비공개 회의록 등의 열람과 대출금지) 위원장은 의원이 비공개 회의록, 그 밖에 비밀참고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때에는 심사·감사 또는 조사에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용해야 한다. 이 경우 의회 밖으로는 대출하지 못한다.	제60조(비공개 회의록 등의 열람과 대출금지) 위원장은 의원으로부터 비공개 회의록 그 밖에 비밀 참고자료의 열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심사·감사 또는 조사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 밖으로는 대출하지 못한다.	

세종시의회 회의 운영조례 및 규칙	수원시의회 기본조례 및 회의규칙	비고
제5장 예산안과 결산 등 심사		
제74조(예산안 심의) ①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후 본회의에서 시장이나 교육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③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내용을 존중하여야 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결위원회 심사기간 내에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결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61조(예산안 심의) ①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되는 경우에는 시장으로 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장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③ 의장은 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경우에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바로 예결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75조(예산안의 수정동의) 예결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	제62조(예산안의 수정동의) 예결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	

세종시의회 회의 운영조례 및 규칙	수원시의회 기본조례 및 회의규칙	비고
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해당 의안 상정 전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76조(예산안의 의결) ① 예산안의 심사보고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각 부문별로 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산 각 부문의 의사가 끝나면 총액에 대하여 의결한다.	제63조(예산안의 의결) ① 예산안의 심사보고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각 부문별로 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② 예산 각 부문의 의사가 끝나면 총액에 대하여 의결한다.	
제77조(예산안의 재심요구)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그 사항에 한하여 기간을 정하여 예결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제64조(예산안의 재심요구)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로 그 사항에 한정하여 기간을 정하여 예결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제78조(결산의 심사) ① 의회에 결산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결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한다. ③ 의장이 결산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제74조제4항에 따른다.	제65조(결산의 심사) ① 의회에 결산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예결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 심사하게 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한다. ③ 의장이 결산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제61조제3항을 준용한다.	

세종시의회 회의 운영조례 및 규칙	수원시의회 기본조례 및 회의규칙	비고
제79조(기금운용계획안 등 심사)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기금의 결산에 관하여는 제74조부터 제78조까지에 따른다. 이 경우 “예산안”과 “결산”은 각각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기금의 결산”으로 본다.	제65조의2(기금운용계획안 등 심사)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기금의 결산은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예산안”은 “기금운용계획안(기금운용계획변경안)”으로, “결산”은 “기금 결산”으로 본다.	
제6장 시장 및 교육감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제80조(시장 등의 출석요구) ① 본회의는 그 의결로 시장, 교육감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시장, 교육감 또는 관계공무원은 출석·답변해야 하며, 시장 또는 교육감이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대리출석이 필요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사전 제출한 후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47조(시장 등의 출석요구) ① 본회의는 그 의결로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시장이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의 대리 출석이 필요한 때는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사전 제출한 후에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④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	

세종시의회 회의 운영조례 및 규칙	수원시의회 기본조례 및 회의규칙	비고
	계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제1부시장·제2부시장 2. 시장의 보조기관 중 실·국장, 과장급 공무원 3. 법 제113조부터 제116조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의 장(직속기관 및 사업소 등) 4. 법 제117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 5.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시 본청의 과장과 동일 직급 이상인 공무원	
제81조(시정질문) ① 본회의는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시정전반(교육행정을 포함한다) 또는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집행기관에 대하여 질문(이하 “시정질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시정질문은 본질문과 보충질문으로 구분하며, 본질문은 질문의원의 신청에 따라 1문1답 방식 또는 일괄질문·답변 방식으로 하되, 질문시간은 다음 각 호의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1문1답 방식: 30분 2. 일괄질문·답변 방식: 20분 ③ 보충질문은 제2항의 일괄질문·답변 방식의 답변을 들은 후 질문의원의 신청에 따라 본질문 범위에서 1문1답 방식으로 하되, 질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제48조(시정에 관한 질문) ① 본회의는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시정전반 또는 시정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집행부에 대하여 질문(이하 “시정질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시정질문은 일괄질문·일괄답변방식의 본질문과 일문일답 방식의 보충질문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보충질문은 본질문을 한 의원만 할 수 있다. ③ 시정질문 시간은 전체 40분 이내로 하며, 의장의 허가를 득한 후 10분을 연장할 수 있다. 본질문·답변은 각각 10분 이내로 한다. ④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세종시의회 회의 운영조례 및 규칙	수원시의회 기본조례 및 회의규칙	비고
④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질문방식을 기재한 별지 제3호서식의 시정질문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72시간 전까지 시정질문요지서가 시장 또는 교육감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해야 한다. ⑤ 시장 또는 교육감은 제4항의 시정질문요지서에 대한 서면답변서를 늦어도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의장에게 송부해야 하며, 의장은 송부받은 서면답변서를 해당 의원에게 지체 없이 배부해야 한다. ⑥ 질문의원과 질문순서는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⑦ 의장은 시정질문이 1문1답의 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의원의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이 교대로 균형 있게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⑧ 그 밖에 시정질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정한다.	질문시간 96시간(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전까지 질문요지서가 시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하고, 시장은 질문시간 48시간 전까지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구체적인 서면 답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해당의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시정질문 의원 수 및 순서는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하여 의장이 정한다. ⑥ 그 밖에 시정질문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82조(시장 등에 대한 서면질문) ① 의원이 시장 또는 교육감에게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할 때에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의장은 지체 없이 이를 시장	제49조(시장에 대한 서면질문) ① 시장에게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할 때에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지체 없이 시장에게 이송한다.	

세종시의회 회의 운영조례 및 규칙	수원시의회 기본조례 및 회의규칙	비고
또는 교육감에게 이송한다. ② 시장 또는 교육감은 질문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해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 내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의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질문서를 받는 날로부터 10일(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그 기간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하여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할 수 있다.	
제82조의2(긴급현안질문) ①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찬성으로 회기 중에 제81조에 따라 시정질문에서 제기되지 않은 사안으로써 긴급히 발생한 중요 특정 현안문제나 사건을 대상으로 집행부에 대하여 질문(이하 “긴급현안질문”이라 한다)을 할 것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긴급현안질문을 요구하는 의원은 그 이유와 질문요지 및 출석대상공무원을 기재한 제4호서식의 질문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시정질문요지서가 접수되면 그 실시여부와 의사일정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의장은 필요한 경우 본회의에서 그 실시여부를 표결에 부쳐 정할 수 있다.		* 긴급현안에 관한 질문에 대한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세종시의회 회의 운영조례 및 규칙	수원시의회 기본조례 및 회의규칙	비고
④ 제3항에 따른 의장의 결정 또는 본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해당 관계 공무원에 대한 출석 요구의 의결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⑤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시정질문요지서를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시장 또는 교육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⑥ 긴급현안질문 시간은 총 60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⑦ 의원이 긴급현안질문을 할 경우에 질문시간은 10분을, 보충질문시간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⑧ 그 밖에 긴급현안질문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제81조를 준용한다.		
제83조(시장 등의 발언) 시장, 교육감 또는 관계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0조(시장 등의 발언)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장 사직과 자격심사		
제84조(사직) ① 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서명·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사직의 허가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30조(사직) ① 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서명 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직의 허가 여부는 토론 없이 표결한다. 다만,	

세종시의회 회의 운영조례 및 규칙	수원시의회 기본조례 및 회의규칙	비고
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의원은 제출한 사직서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는 철회할 수 있다.	폐회 중에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 ③ 의원은 제출한 사직서를 의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제85조(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① 의장은 법 제79조에 따른 의원의 자격심사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부분을 피심의원에게 송달하여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피심원이 천재지변 또는 질병, 그 밖의 사고로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함을 증명한 때에는 의장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31조(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① 의장은 법 제79조에 따라 의원의 자격심사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부분을 피심의원에게 송달하여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 ② 피심원이 천재지변 또는 질병 그 밖에 사고에 따라 기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함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장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86조(답변서의 위원회 심사 등) ① 의장이 제85조에 따라 답변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따라 심사한다. 다만,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서만으로 심사를 할 수 있다. 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	제32조(답변서의 위원회 심사 등) ① 의장이 답변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따라 심사한다. 다만, 기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구서만으로 심사를 할 수 있다. 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이때 의장은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세종시의회 회의 운영조례 및 규칙	수원시의회 기본조례 및 회의규칙	비고
다. 이 경우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 ④ 자격상실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에게 송부한다.	④ 자격상실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에게 송부한다.	
제87조(당사자의 심문과 발언)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의장을 경유하여 청구의원과 피심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청구의원과 피심원은 윤리특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출석·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심원은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출석·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③ 피심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제33조(당사자의 심문과 발언)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을 경유하여 청구의원과 피심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청구의원과 피심원은 윤리특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이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심원은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출석·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③ 피심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또는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제8장 질서		
제88조(경호) ① 의장은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할 경찰관서에 대하여 경찰관의 파견을 미리 요구할 수 있으며 의회의 경호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이 단독으로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경찰관의 파견을 즉시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찰관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회의장 밖에서 경호한다.	제52조(경호) ① 의장은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할 경찰관서로 하여금 경찰관의 파견을 미리 요구할 수 있으며, 의회의 경호가 급히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의장이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경찰관의 파견을 즉시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찰관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회의장 밖에서 경호한다.	

세종시의회 회의 운영조례 및 규칙	수원시의회 기본조례 및 회의규칙	비고
제89조(회의의 질서유지)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국가 또는 시의 기관이나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말과 행동 2.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간행물, 그 밖의 문서를 낭독하는 행위 3.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료·문서 등의 인쇄물 배포 및 녹음·녹화·촬영 행위. 4. 음식물의 섭취와 흡연 5.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의 휴대반입 6. 그 밖에 폭력의 행사 등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제53조(회의의 질서유지)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 안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말과 행동 2.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잡지·간행물 그 밖에 문서를 낭독하는 행위 3.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료·문서 등의 인쇄물 배포 및 녹음·녹화·촬영 행위 4. 음식물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5.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의 휴대반입 6. 그 밖에 폭력의 행사 등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	
제90조(회의장 출입의 제한)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 공무원, 그 밖의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제54조(회의장 출입의 제한) 회의장에는 의원·관계 공무원 그 밖에 의안 심의에 필요한 관계 공무원과 의장이 허가 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제91조(방청의 허가) ① 회의를 방청하려는 사람은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방청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 또는 위원장에	제55조(방청의 허가) 의장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한다.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세종시의회 회의 운영조례 및 규칙	수원시의회 기본조례 및 회의규칙	비고
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의장 또는 위원장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한다.	제77조의2(방청의 신청) 방청의 신청은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회의시작 2시간 전까지 서면 신청해야 하며, 본회의 방청은 의장에게, 위원회 방청은 해당 위원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제92조(방청석의 구분 및 방청권의 종별) ① 방청석은 일반석과 기자석으로 구분한다. ② 방청권의 종별은 일반방청권, 단체방청권, 장기방청권으로 한다.	제77조(방청석의 구분 및 방청권의 종별) ① 방청석은 일반석과 기자석으로 구분한다. ② 방청권의 종별은 일반방청권, 단체방청권, 장기방청권으로 한다.	
제93조(방청권의 교부 및 기재) ① 사무처장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방청인 수를 정하여 방청권을 교부한다. ② 단체방청권은 교육기관, 그 밖에 단체의 신청에 따라 단체로 방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그 대표 또는 책임자에게 교부한다. ③ 장기방청권은 보도기관 종사자나 업무상 방청이 특히 필요한 관서의 직원에게 교부하며 장기 방청권을 교부받은 사람은 그 회기만을 방청할 수 있다. ④ 방청인은 방청권에 주소·성명·직업 및 연령 등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제78조(방청권의 교부 및 기재) ① 방청권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국장이나 그 수를 정하여 이를 교부한다. ② 단체방청권 교육기관 그 밖에 단체의 신청에 의하여 단체로 방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그 대표 또는 책임자에게 교부한다. ③ 장기방청권은 보도기관 종사자나 업무상 방청이 특히 필요한 관서의 직원에게 교부하며 장기방청권을 교부받은 사람은 그 회기를 통하여 방청할 수 있다. ④ 방청인은 방청권에 주소·성명·직업 및 연령 등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세종시의회 회의 운영조례 및 규칙	수원시의회 기본조례 및 회의규칙	비고
제93조의2(방청권의 제시) 방청인은 입장할 때 또는 사무처 직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방청권을 제시하고 점검을 받아야 하며,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94조(방청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게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흥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2. 술기운이 있는 사람 3. 삭제. 4. 그 밖에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 ②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필요할 때에는 경찰관 또는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방청인의 휴대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 또는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때에는 방청권을 소지한 사람에게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제79조(방청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흥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 2. 술 기운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 ② 의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관 또는 관계 직원으로 하여금 방청인의 휴대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 및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때에는 방청권을 소지한 사람에게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제95조(방청인의 준수사항) 방청인은 다음 각 호와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1.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제80조(방청인의 준수사항) 방청인은 다음과 같이 행위를 할 수 없다. 1.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세종시의회 회의 운영조례 및 규칙	수원시의회 기본조례 및 회의규칙	비고
2. 모자, 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3.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4. 음식물을 섭취하거나 흡연하는 행위 5. 신문이나 그 밖의 서적류를 읽는 행위 6.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 없는 녹음·녹화·촬영 행위 7.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치는 행위 8. 그 밖에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2. 모자·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3. 회의와 관계 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4. 음식물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5. 신문 그 밖에 서적류의 열독행위 6. 의장의 허가 없는 녹음·녹화·촬영행위 7.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8. 그 밖에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제96조(중계방송 등) ①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외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게만 회의장 안(본회의장은 방청석에 한한다)에서의 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 등(이하 “중계방송 등”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매 회기 초에 허가신청서를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는 허가를 얻고자 할 때마다 위원장에게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③ 사무처 직원의 기록보존 등의 업무와 관련된 회의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제56조(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 등) ①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 한정하여 회의장 안(본회의장은 방청석에 한정한다)에서의 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을 허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녹음 등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매 회기 초에 허가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 있어서는 허가를 얻고자 할 때마다 위원장에게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세종시의회 회의 운영조례 및 규칙	수원시의회 기본조례 및 회의규칙	비고
장 내에서의 녹음·녹화 및 촬영은 절차상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중계방송 등을 하는 사람은 회의장 질서를 문란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96조의2(정보통신망 등을 통한 중계방송) 의장은 비공개 대상 이외에는 본회의 의사를 인터넷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중계방송하여야 한다.	③ 중계방송은 의회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중계방송 할 수 있으며,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중계방송시스템이 설치된 회의장소에서의 회의에 한정한다)를 그 대상으로 한다. ④ 중계방송은 생중계 또는 녹화중계로 하며 영상자료를 의장의 허가없이 임의적으로 편집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회 등 의사진행과 관련이 없는 시간은 예외로 한다. ⑤ 사무직원의 기록보존 등의 업무와 관련된 회의장에서 녹음·녹화·촬영은 절차상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녹음 등을 하는 사람은 회의장 질서를 문란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9장 윤리심사와 징계 제97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 의장은 법 제86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의원(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위원장은 소속위원 중에서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1항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③ 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82조(윤리심사 및 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 의장은 법 제86조 및 「수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16조에 해당 하는 징계대상의원(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 또는 「수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를 위반한 의원(이하 "윤리심사대상자"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소속 위원	

세종시의회 회의 운영조례 및 규칙	수원시의회 기본조례 및 회의규칙	비고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 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83조에 따른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위원을 요하지 아니하며 징계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④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⑤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징계대상행위가 지극히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본회의에 바로 부의할 수 있다.	중에서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보고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1항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③ 의원이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에 대한 윤리심사 또는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그 사유를 기재한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3조에 따라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위원을 요하지 아니하며 징계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④ 제3항의 윤리심사요구 및 징계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⑤ 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의장은 징계대상행위가 지극히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회의에 바로 부의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유로 해당 의원에게 대한 윤리심사와 징계를 중복하여 요구할 수 없다.	
제97조의2(윤리심사 및 보고) 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세종시의회 회의 운영조례 및 규칙	수원시의회 기본조례 및 회의규칙	비고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윤리심사의 요구·회부·시한, 회의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제97조 및 제98조부터 제10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윤리심사에 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심사결과를 지체없이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8조(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등) ① 제97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징계회부는 의장이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는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해야 한다. 같은 조 제5항의 본회의 부의시한 또한 같다. ② 제97조제2항에 따른 위원장의 징계대상자 보고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징계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해야 한다. 다만, 폐회 중에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차기의회 집회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해야 한다. 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제9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징계의 회부가 있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심	제83조(윤리심사 및 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① 제82조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윤리심사회부 또는 징계회부는 의장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 그 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윤리심사요구서나 징계요구서를 제출 받은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5항의 본회의 부의 시한 또한 같다. ② 제82조제2항에 따른 위원장의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 보고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윤리심사요구 또는 징계요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그 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기간 중에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차기 의회의 집회일로부터 3일 이내에	

세종시의회 회의 운영조례 및 규칙	수원시의회 기본조례 및 회의규칙	비고
사를 종료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 기간 내에 그 심사를 종료하지 아니한 경우에 윤리특별위원회는 그 의결로 3개월의 범위에서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제82조에 따른 윤리심사 회부가 있는 날부터 2월 이내에 그 심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제99조(의사의 비공개)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4조(의사의 비공개)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00조(심문 및 변명)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장을 경유하여 징계대상자와 관계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의원은 자기의 징계안에 관한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으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변명 또는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은 변명이 끝난 후 회의장에서 퇴장해야 한다.	제85조(심문 및 변명)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장을 경유하여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와 관계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의원은 자기의 윤리심사안 또는 징계안에 관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으나 의장 또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01조(징계의 의결과 선포) ①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본회의에 부의하여 이를 의결해야 한다. ② 징계를 의결할 때에는 의장은 공개회의에서 이를	제86조(윤리심사결과 통고 및 징계의결과 선포)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심사대상 의원이 윤리위반행위를 하였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해당 의원에게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서면 통고한다. 다만, 필	

세종시의회 회의 운영조례 및 규칙	수원시의회 기본조례 및 회의규칙	비고
선포한다.	요한 경우 해당 의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구두로 알릴 수 있다. ②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윤리심사결과 또는 징계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③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윤리심사보고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하며, 징계심사보고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본회의에 부의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징계를 의결한 경우에는 이를 공개회의에서 선포한다.	

<표 13> 세종시와 수원시 조례 비교

5) 교섭단체 관련 세종시와 수원시 조례 비교

세종시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수원시 기본조례	비고
제2조(교섭단체의 구성) ①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3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그러나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3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이하 “교섭단체 대표”라 한	제34조(교섭단체의 구성) ① 의회에 5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5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그 단체의 소속의원이 연서·날인한 명부와 대표의원의 직인 및 사인의 인영을	* 세종시의 경우 3명 이상이면 교섭단체가 가능하고 그 중에서 부대표를 지명하도록 하고 있는데 수원시

세종시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수원시 기본조례	비고
다)은 그 단체의 소속의원 중에서 부대표 1명을 지명하여 소속의원명부와 교섭단체 대표의 직인 및 사인의 인영을 세종특별자치시의회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교섭단체를 구성할 때에는 소속의원명부 대신 소속의원의 연서·날인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직선거법」제203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동시선거(이하 “전국동시지방선거”라 한다) 후 제2항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가 제출하는 소속의원명부 등은 의장 선거일 전날까지 의회사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교섭단체 대표는 그 소속의원의 이동이 있거나 소속 정당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⑤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정당을 변경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속의원의 이동이 있거나 소속정당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③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않은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정당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는 5명 이상이면 교섭단체가 가능함에도 부대표제도가 없으므로 이를 보강할 필요가 있음 * 교섭단체의 기능 추가할 필요 있음
제2조의4(상임위원회)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7명 이내	제35조(상임위원회와 의원정수)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10명 이내	

세종시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수원시 기본조례	비고
2. 행정복지위원회 7명 이내 3. 산업건설위원회 7명 이내 4. 교육안전위원회 7명 이내	2. 기획경제위원회 10명 이내 3. 도시환경위원회 10명 이내 4. 문화체육교육위원회 10명 이내 5. 복지안전위원회 10명 이내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의회소관 조례 및 의회운영에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라.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2. 행정복지위원회 가. 대변인, 운영지원과, 기획조정실, 자치분권국 (읍·면·동을 포함한다), 보건복지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보건소,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시립도서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36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과 의회사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 나. 의회관련 조례 및 규칙에 관한 사항 다.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2. 기획경제위원회 시민소통기획관, 인권담당관, 감사관, 언론담당관, 홍보기획관, 청년정책관, 기획조정실, 경제정책국, 농업기술센터, 대외협력사무소 소관에 관한 사항 3. 도시환경위원회 도시디자인단, 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 도시정책실, 환경국, 도시개발국,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항	

세종시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수원시 기본조례	비고
라.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세종시문화재단, 세종시사회서비스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바. 세종특별자치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사. 대전세종연구원 세종연구실 소관에 관한 사항 3. 산업건설위원회 가. 경제산업국, 도시성장본부, 건설교통국, 환경녹지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시설관리사업소, 공공건설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바. 세종도시교통공사 소관에 속하는 사항 4. 교육안전위원회 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조치원소방서, 세종소방서 소관에 속하는 사항 ③ <삭제, 2019. 12. 16.>	4. 문화체육교육위원회 문화체육교육국, 공항협력국, 화성사업소, 도서관사업소, 박물관사업소, 수원시립미술관 소관에 관한 사항 5. 복지안전위원회 복지여성국, 안전교통국, 각 구 보건소, 공원녹지사업소, 도로교통관리사업소, 도시안전통합센터 소관에 관한 사항	

세종시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수원시 기본조례	비고
제4조(상임위원) ① 의회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제37조(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위원을 겸할 수 있다. ② 의원은 자기 직업과 관련된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제5조(상임위원의 임기) ①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부터 2년간 재임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처음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만료되며, 임기 만료일 다음날 부득이한 사유로 새로운 위원이 선임되지 아니할 때에는 위원을 새로 선임하는 전일까지 재임한다. ②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38조(상임위원의 임기) ① 상임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총선거 후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의원의 임기 개시일부터 기산한다. ② 상임위원의 임기가 폐회 기간 중 만료되는 경우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 ③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상임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제39조(상임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상임위원장은 소속 상임위원 중 의장·부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세종시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수원시 기본조례	비고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③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소속 상임위원의 출석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⑤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7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해야 한다. 다만, 활동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특별위원회는 활동 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해야 한다. ④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⑤ 의회는 의원의 윤리심사와 징계·자격에 관한 사	제40조(특별위원회의 구성) ① 의회는 여러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 위원 정수는 14명 이내로 한다.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정수는 17명 이내로 한다. ③ 의회는 의원의 자격심사·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④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는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심사할 경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를 제외한 특별위원회는 관련된 상임위원회와	

세종시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수원시 기본조례	비고
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특별위원회는 활동 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존속한다. 다만, 그 기간까지 제3항의 활동결과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⑥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그 위원회의 활동기간으로 한다. ⑧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0조의2(예산결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예산안·결산·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 예비비 지출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선임된 날부터 1년간 재임하되, 그 재임 기간은 매 연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로 한다. ③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그 활동기간 중 심사한 안건 등에 대한 활동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40조제6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8조(특별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특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두되 해당 특별위원회가 그 소속위원(이하 “특별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서로	제41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해당 특	

세종시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수원시 기본조례	비고
뽑으며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만, 본회의 보고 전이라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특별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소속 출석특별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특별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특별위원장은 소속 특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별위원회의 출석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선임) ① 상임위원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 후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다만, 의장은 제11조에 따른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해야 한다. ② 특별위원은 제1항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제42조(위원의 선임) ①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위원 수의 비율에 따라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 후 추천하고, 본회의에서 의결로 선임한다. ②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상임위원 선임은 의장이 해당 의원의 의견을 들은 후 추천하고, 본회의에서 의결로 선임한다. ③ 특별위원회 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상임위원 중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제43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세종시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수원시 기본조례	비고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제11조에 따른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출석위원중 임시위원장을 선출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제11조(부위원장) ①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명을 둔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가 소속위원 중에서 서로 뽑으며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만, 본회의 보고 전이라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이에 따른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44조(부위원장) ①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명을 둔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의2(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경우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5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46조(법률고문) ① 의장은 의회의 법률사안의 자문	

세종시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수원시 기본조례	비고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률고문을 위촉·운영한다.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법률고문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수원시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전문가의 활용) ① 위원회는 그 의결로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안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하 “전문가”라 한다)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전문가를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이 의장에게 이를 요청하고, 의장은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그 인원 또는 활용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표 14> 세종시와 수원시 교섭단체 규정 비교

제5장 결론

○ 결론에 대신하여 수원시의회 기본조례와 회의규칙의 개정(안)을 제시하고자 함.

I. 수원시의회 기본조례 개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민의 대의기관인 수원시의회 존재가치와 운영에 관한 기본이 되는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지방자치의 구현을 향한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수원시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수원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는 수원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대의기관으로서 그 운영에 있어 합리성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시민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조의2(의원의 의무) ① 지방의회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며, 지방의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의원은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④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제4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및 그 기관·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시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지방의회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범위는 「수원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로 정한다.
--

제3조(의회의 운영원칙) 의회는 시민의 의사에 따라 시민과 수원시의회 의원

(이하“의원”이라 한다)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여야 하고,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의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 그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제도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의원의 활동원칙) 의원은 시민의 의사에 기초하여 수원시(이하“시”라 한다)의 균형적인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목표로 활동하여야 하고, 자유로운 의견개진과 토론의 기회를 가짐과 동시에 다른 의원의 인격과 의견을 존중하여야 하며, 「수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 및 「수원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의정활동 참여보장) 의회는 시민의 의정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보장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에 따른 조례를 제정하여야 한다.
--

제6조 〈삭제 2017.01.06〉

제2장 회기운영

제7조(회의총일수)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에 따라 의회의 회의 총 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10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연간 회의 총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 회의의 의결로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8조(회기) 법 **제53조 및 제54조, 제56조**에 따라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의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1.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46일 이내로 한다.
2. 임시회의 회기는 20일 이내로 한다.

제9조(정례회 개최) 의회는 법 **제56조**에 따라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한다.

제10조(정례회 집회) 법 **시행령 제54조(개정 예정)**에 따라 정례회의 집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12월에 집회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정례회 심의)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50조에 따라 결산안의 승인 및 그 밖에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 및 제142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의 실시 및 예산안의 의결, 그 밖에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9.03.29)

제11조의2(임시회의 소집)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 의원 1/3(?)이상의 지방의회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없을 때에는 지방의회의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의 순으로 소집할 수 있다.

제12조(개회식)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후에 개회식을 행한다.

제13조(의회의 개폐선포) 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제3장 의회의 기관 등

제14조(의장·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에 따른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고 2차투표에도 제1항에 따른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일 경우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 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결선투표결과의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각 항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선거한다.

⑤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해당 선거일 1일 전 18:00까지 교섭단체 대표의 추천서 또는 5명 이상의 의원 서명부를 첨부한 등록신청서

를 의회사무국에 서면으로 등록해야 하며, 등록을 한 의원에 한정하여 해당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가진다.

⑥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선거당일 본회의장에서 5분 이내에 정견을 발표할 수 있으며, 발표순서는 후보자 등록 접수순으로 하고 본인의 소견 이외에 다른 의원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

제15조(의장·부의장 임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선출된 날부터 그 직무를 시작하며,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의원의 임기개시일 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된 때에는 그 의장과 부의장은 다음 회기에서 새로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하는 날의 전일까지 재임한다.

제16조(임시의장의 선거)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부의장의 선거에 준한다.

제17조(의장·부의장의 사임)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②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18조(의장의 포상) ① 의장은 의회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거나 모범이 되는 시민, 공무원 또는 기관·단체에 포상을 행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포상에 관한 사항은「수원시의회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19조(의회사무국) ① 의회는 법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수원시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국을 설치하고,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의회사무국에 관한 사항은「수원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20조(의원연구단체) ① 의회는 의원 연구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의원 연구단체를 구성·운영한다.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의원연구단체에 관한 사항은 「수원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20조의2 (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은 「수원시의회 의원 정책지원 전문인력 임용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21조(국제친선협의회) ① 의회와 외국도시 의회와의 교류와 협력을 위하여 의회에 국제친선협의회를 둔다.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국제친선협의회에 관한 사항은 「수원시의회 국제친선협의회 설치 조례」에 따른다.

제22조(공인) ① 의회는 의회에 직인과 관인으로 구별되는 공인을 비치한다.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공인에 관한 사항은 「수원시의회 공인 조례」에 따른다.

제4장 의원

제23조(등록) 의회 의원은 임기 초에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에게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제24조(의석배정) ①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정한다.

②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국장이 지역선거구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제25조(선서) 의원은 임기 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행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26조(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① 법 제40조 및 법 시행령 제33조(개정 예정)에 따라 의원에게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한다.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수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27조(상해 등 보상비의 지급) ① 법 제42조 및 법 시행령 제35조(개정 예정)

에 따라 의원에게 사망·장애·상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수원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28조(의회장) ① 의원이 임기 중에 사망한 때에 의회가 의회장을 집행한다.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의회장에 관한 사항은「수원시의회 의회장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29조(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원의 청가는 5일 이내의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의회에서 허가한다.

③ 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의 기간 내에 의회에 출석하였을 때에는 그 날 이후의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④ 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 신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 위원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출석요구는 문서로 하되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제30조(사직) ① 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서명 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직의 허가 여부는 토론 없이 표결한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

③ 의원은 제출한 사직서를 의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제31조(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① 의장은 법 제91조에 따라 의원의 자격심사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부분을 피심의원에게 송달하여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

② 피심의원이 천재지변 또는 질병 그 밖에 사고에 따라 기일 안에 답변서

를 제출하지 못함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장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32조(답변서의 위원회 심사 등) ① 의장이 답변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따라 심사한다. 다만, 기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구서만으로 심사를 할 수 있다.

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이때 의장은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④ 자격상실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에게 송부한다.

제33조(당사자의 심문과 발언)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을 경유하여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이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심의원은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출석·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③ 피심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또는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제5장 교섭단체 및 위원회와 위원

제34조(교섭단체의 구성) ① 의회에 5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5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교섭단체는 대표의원과 부대표를 둘 수 있다.

③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그 단체의 소속의원이 연서·날인한 명부와 대표의원의 직인 및 사인의 인영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속의원의 이동이 있거나 소속정당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④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않은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정당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의2(교섭단체의 기능 및 지원) ①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효율적인 의회운영 방향 및 정당 정책의 추진
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사 수렴 및 조정
3. 교섭단체 상호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
4. 교섭단체 상호간의 교류·협력
5. 그 밖의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의장은 제1항의 교섭단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필요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수원시의회 교섭단체가 공익적 사업을 제안할 경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35조(상임위원회와 의원정수)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10명 이내
2. 기획경제위원회 10명 이내
3. 도시환경위원회 10명 이내
4. 문화체육교육위원회 10명 이내
5. 복지안전위원회 10명 이내

제36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 가. 의회운영과 의회사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
- 나. 의회관련 조례 및 규칙에 관한 사항
- 다.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2. 기획경제위원회

시민소통기획관, 인권담당관, 감사관, 언론담당관, 홍보기획관, 청년정책관, 기획조정실, 경제정책국, 농업기술센터, 대외협력사무소 소관에 관한 사항

3. 도시환경위원회

도시디자인단, 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 도시정책실, 환경국, 도시개발국,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항

4. 문화체육교육위원회

문화체육교육국, 공항협력국, 화성사업소, 도서관사업소, 박물관사업소, 수원시립미술관 소관에 관한 사항

5. 복지안전위원회

복지여성국, 안전교통국, 각 구 보건소, 공원녹지사업소, 도로교통관리사업소, 도시안전통합센터 소관에 관한 사항

제37조(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위원을 겸할 수 있다.

② 의원은 자기 직업과 관련된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제38조(상임위원의 임기) ① 상임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총선거 후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의원의 임기 개시일부터 기산한다.

② 상임위원의 임기가 폐회 기간 중 만료되는 경우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

③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9조(상임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상임위원장은 소속 상임위원 중 의장·부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③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소속 상임위원의 출석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⑤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40조(특별위원회의 구성) ① 의회는 여러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 위원 정수는 14명 이내로 한다.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

원정수는 17명 이내로 한다.

- ③ 의회는 의원의 자격심사·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 ④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⑤ 제1항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는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심사할 경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를 제외한 특별위원회는 관련된 상임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⑥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⑦ 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그 위원회의 활동기간으로 한다.
- ⑧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0조의2(예산결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예산안·결산·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 예비비 지출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 ②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선임된 날부터 1년간 재임하되, 그 재임 기간은 매 연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로 한다.
- ③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그 활동기간 중 심사한 안건 등에 대한 활동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제40조제6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41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해당 특별위원회의 출석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42조(위원의 선임) ①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의원수의 비율에 따라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 후 추천하고, 본회의에서 의결로 선임한다.

- ②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상임위원 선임은 의장이해당 의원의 의견을 들은 후 추천하고, 본회의에서 의결로 선임한다.
- ③ 특별위원회 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상임위원 중 본회의에서 선임

한다.

제43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제44조(부위원장) ①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명을 둔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45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46조(법률고문) ① 의장은 의회의 법률사안의 자문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률고문을 위촉·운영한다.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법률고문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수원시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6장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 등

제47조(시장 등의 출석요구) ① 본회의는 그 의결로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시장이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의 대리 출석이 필요한 때는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사전 제출한 후에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 출석·답

변하게 할 수 있다.

④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제1부시장·제2부시장
2. 시장의 보조기관 중 실·국장, 과장급 공무원
3. 법 제113조부터 제116조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의 장(직속기관 및 사업소 등)
4. 법 제117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
5.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시 본청의 과장과 동일 직급 이상인 공무원

제48조(시정에 관한 질문) ① 본회의는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시정전반 또는 시정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집행부에 대하여 질문(이하 “시정질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시정질문은 일괄질문·일괄답변방식의 본질문과 일문일답 방식의 보충질문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보충질문은 본질문을 한 의원만 할 수 있다.

③ 시정질문 시간은 전체 40분 이내로 하며, 의장의 허가를 득한 후 10분을 연장할 수 있다. 본질문·답변은 각각 10분 이내로 한다.

④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96시간(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전까지 질문요지서가 시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하고, 시장은 질문시간 48시간 전까지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구체적인 서면 답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해당의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시정질문 의원 수 및 순서는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하여 의장이 정한다.

⑥ 그 밖에 시정질문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48조의2(긴급현안질문) ① 의원은 10명 이상의 찬성으로 회기 중에 제97조에 따라 대집행부 질문에서 제기되지 않은 사안으로서 긴급히 발생한 중요 특정현안문제나 사건을 대상으로 집행부에 대하여 질문(이하 “긴급현안질문”이라 한다)을 할 것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질문을 요구하는 의원은 그 이유와 질문요지 및 출석대상공무원을 기재한 질문요구서를 본회의 개의 24시간 전까지 소속 교섭단체

대표의원을 경유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은 질문요구서를 의장에게 바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질문요구서가 접수되면 그 실시여부와 의사일정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의장은 필요한 경우 본회의에서 그 실시여부를 표결에 부쳐 정할 수 있다.

④ 긴급현안질문 시간은 총 60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은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⑤ 긴급현안질문을 할 경우에 의원의 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보충질문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⑥ 긴급현안질문의 절차 등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제48조를 준용한다.

제49조(시장에 대한 서면질문) ① 시장에게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할 때에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지체 없이 시장에게 이송한다.

② 시장은 질문서를 받는 날로부터 10일(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그 기간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하여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할 수 있다.

제50조(시장 등의 발언)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1조(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① 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사항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7장 질서와 경호

제52조(경호) ① 의장은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할 경찰관서로 하여금 경찰관의 파견을 미리 요구할 수 있으며, 의회의 경호가 급히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의장이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경찰관의 파견을 즉시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찰관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회의장 밖에서 경호한다.

제53조(회의의 질서유지)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 안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말과 행동
2.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잡지·간행물 그 밖에 문서를 낭독하는 행위
3.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료·문서 등의 인쇄물 배포 및 녹음·녹화 촬영 행위
4. 음식물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5.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의 휴대반입
6. 그 밖에 폭력의 행사 등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 시키는 행위

제54조(회의장 출입의 제한) 회의장에는 의원·관계 공무원 그 밖에 의안 심의에 필요한 관계 공무원과 의장이 허가 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제55조(방청의 허가) 의장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한다.

제56조(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 등) ①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 한정하여 회의장 안(본회의장은 방청석에 한정한다)에서의 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을 허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녹음 등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매 회기 초에 허가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 있어서는 허가를 얻고자 할 때마다 위원장에게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③ 중계방송은 의회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중계방송 할 수 있으며,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중계방송시스템이 설치된 회의장소에서의 회의에 한정한다)를 그 대상으로 한다.

④ 중계방송은 생중계 또는 녹화중계로 하며 영상자료를 의장의 허가없이 임의적으로 편집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회 등 의사진행과 관련이 없는 시간은 예외로 한다.

⑤ 사무직원의 기록보존 등의 업무와 관련된 회의장에서의 녹음·녹화·촬영은 절차상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녹음 등을 하는 사람은 회의장 질서를 문란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5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II.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개정(안)

제19조(의안의 제출·발의)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시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② 제1항의 의안은 별지 제4호부터 제7호 서식에 따라 그 안을 갖추어 늦어도 회기 시작 1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시행에 긴급이 필요한 의안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예산상의 조치가 필요한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 ‘수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수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의 개정도 함께 이루어져야 함

④ 제1항에 따라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위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52조(위원회의 심사) ①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먼저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전문 위원(전문위원을 두는 경우)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제안자가 시장일 경우나 제2항의 경우 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신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그 의결로 청구인의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취지(청구인의 대표자와의 질의·답변을 포함한다)를 들을 수 있다.

*** 원격회의**

(원격영상회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회의를 원격영상회의(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다른 장소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회의를 말한다. 이하에서 같다)의 방식으로 개의할 수 있다.

1. 감염병 확산 방지
2. 천재지변

(원격출석·발언·표결) 원격영상회의에 출석한 의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보며, 제29조와 제39조에도 불구하고 발언과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원격표결방법) 원격영상회의를 하는 경우 제41조에 규정된 표결방법 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한 다른 방법으로 표결할 수 있다.

(준용) 위원회 회의에 관하여 위 3개 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위원장’으로 본다.

참 고 문 헌

<국내 문헌>

- 강재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의의와 개정법률의 주요 내용”, 경남연구원, 「경남발전」 153호, 2021
- 박기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평가와 보완적 대안”,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재정」 2021권 1호, 2021
- 배건이, 「주요 외국의 지방자치제도 연구 - 스위스 -」, 한국법제연구원, 2018
- 아키스키 겐고, “일본의 지방자치와 지방행정”, 「한일공동연구총서」,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2007
- 윤인숙, 「주요 외국의 지방자치제도 연구 - 미국 -」, 한국법제연구원, 2018
- 이동영, “지방자치법 개정과 지방의회의 변화”, 한국자치학회, 「공공정책」 Vol.183, 2021
- 이병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주요내용과 의미”, 한국의회발전연구회, 「의정연구」 제27권 제1호(통권62호), 2021
- 이상윤, 「주요 외국의 지방자치제도 연구 - 일본 -」, 한국법제연구원, 2018
- 장은혜, 「주요 외국의 지방자치제도 연구 - 영국 -」, 한국법제연구원, 2018
- 전훈, 「주요 외국의 지방자치제도 연구 - 프랑스 -」, 한국법제연구원, 2018
- 정남철, 「주요 외국의 지방자치제도 연구 - 독일 -」, 한국법제연구원, 2018
- 최승제,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 주민주권 구현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021
- 최우용, “일본의 기초지방자치단체(시·정·촌) 통합에 관한 법률 및 사례 연구”, 「공법학연구」 제11권 제4호, 2010
- 하민지, “지방자치법 개정과 한국 지방자치의 의미와 과제”, 경남연구원, 「경남발전」 153호, 2021

<외국 문헌>

公益社團法人 經制同友會, 住民が自らの選択と責任で創り上げる地方自治,
2016

松田恵里, “地方分権改革の経緯と動向”, 「調査と情報」第930号(国立国会図}書
館 調査及び立法考査局行政法務課), 2016

宇賀克也, 「地方自治法概説(第6版)」, 有斐閣, 2015

片山善博, “地方自治における 法の不足 -法曹と法テラスへの期待-”, 「綜合法
律支援論叢」第9号, 2017

수원시의회 운영 조례 정비에 관한 연구



수원시의회
SUWON CITY COUNCIL